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2019 정책워크숍 ‖ 한광연 정체성 정립과 정책과제

2019. 1. 25. FRI ~ 1. 26. SAT
광주문화재단 4층 문화사랑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목차

세부일정 및 내용 05

1일차 1. 25.(금) 1부 주요발제

발제1. '문화비전 2030'과 광역문화재단의 정책과제 07

발제2. 한광연 사업방향 및 조직강화 방안 73

발제3. 지역문화정책 담론의 생산과 소통을 위한_숫자, 의미, 공감 83

– DATA의 間知 92

1일차 1. 25.(금) / 2부 종합토론 103

2일차 1. 26.(토) 보충토론 및 아젠다 정리 103

세부일정 및 내용

1.25.(금) 광주문화재단 4층 문화사랑 / 전체 진행 ॥ 김지원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사무처장	
14:00~14:05 (5′)	인사말 / 김윤기 한광연 회장,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14:05~16:00 (115′)	○ 사회 : 김지원(한광연 사무처장, 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실장) ○ 발제 1 : 손동혁(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문화비전 2030'과 광역문화재단의 정책과제」 ○ 발제 2 : 박경동(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팀장) 한광연 사업방향 및 조직강화 방안 ○ 발제 3 : 김해보(서울문화재단 감사실장)/김창영(케이스탯리서치 상무) 지역문화정책 담론의 생산과 소통을 위한_숫자, 의미, 공감
16:10~19:00 (170′)	○ 발제 1 ~ 발제 4에 대한 종합토론
19:00~21:00 (120′)	○ 재단 인근 식당
1.26.(토) 광주문화재단 4층 문화사랑 / 전체 진행 ॥ 김지원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사무처장	
09:00~13:00 (240′)	○ 발제 1 ~ 발제 4에 대한 보충 토론 ○ 발제 1 ~ 발제 4에 요약 및 아젠다 정리
13:00~14:00 (60′)	○ 재단 인근 식당

발제 1

'문화비전 2030'과 광역문화재단의 정책과제

손동혁 | 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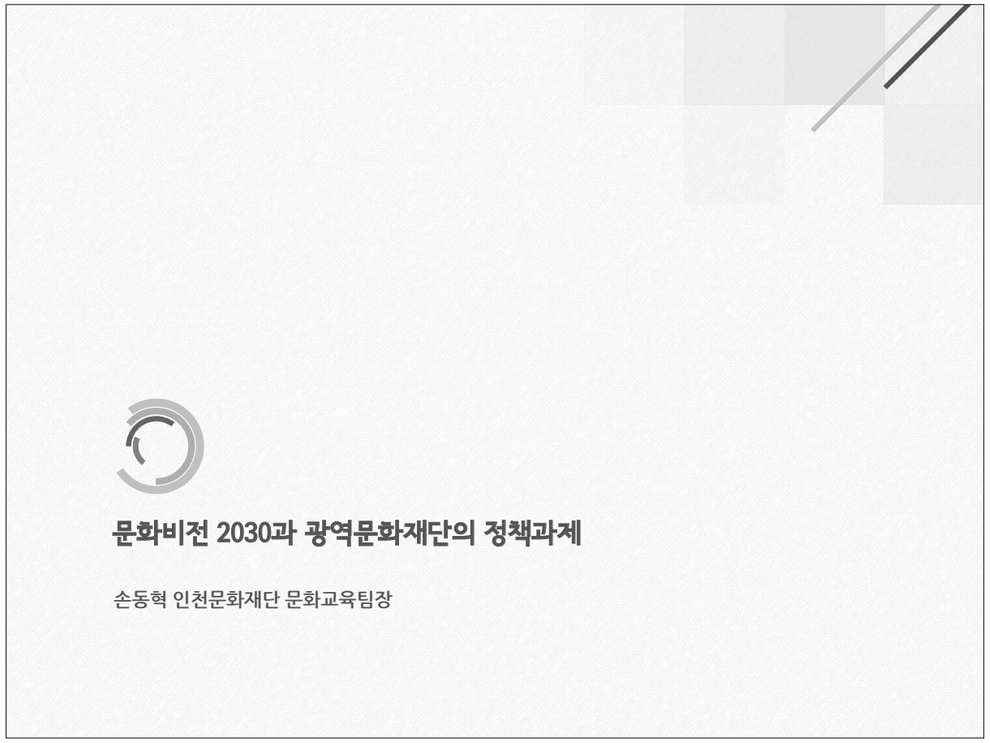

문화비전 2030과 광역문화재단의 정책과제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목차

1. 문화비전 2030 수립의 배경과 의미

2. 문화비전 2030의 주요 내용

3. 문화비전 2030과 광역문화재단의 정책과제

문화비전 2030 수립의 배경과 의미

경쟁·효율을 중시하는 일 중심의 사회
- 과도한 노동시간, 자유시간 부족, 임금격차 등으로 문화 여가시간은 물론, 기본 휴식시간도 확보하지 못해 삶의 만족도 저하
- '일'과 '생존' 외에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회문화 활동에 관심을 쏟을 시간이 부족
- 일 중심의 사회구조는 창의적 사고 저해

상호 신뢰의 부족
-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상호 신뢰' 부족
- 경제 양극화에 따른 소외, 지위, 위계 등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 세대, 젠더 간 갈등 등의 문제 상존

기회이자 위기, 4차 산업혁명의 도래
- 사회 혁신의 주체가 예술가, 혁신가 등 소수에서 모든 개인으로 확장
- 기술자동화로 단순노동이 사라져 창의적 혁신역량을 갖추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이 소외될 위기
- 인간의 육체, 지식 노동이 인공 지능(AI)과 로봇으로 대체됨에 따른 인간 본연의 존엄성 상실과 삶의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존재

3

문화비전 2030 수립의 배경과 의미

진보·보수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화비전이 필요
- 지난 20년 동안 문화정책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정치적 이념과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반복
- 진보·보수라는 낡은 이념적 잣대를 넘어서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문화의 역할이 필요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장기 문화정책이 필요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기술혁신과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문화정책이 적극 대응
-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문화·예술·스포츠·관광 교류가 남북 평화 통일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미투(Me Too)운동'을 계기로 우리 문화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
- 예술인의 창작의 권리가 완전하게 보장되고, 정치이념의 견해 차이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문화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
- 젠더에 대한 올바른 인식, 평등한 관계를 위해 문화예술계가 대안을 제시할 필요

문화의 기본 가치에 충실한 문화정책 수립이 필요
- 문화의 고유한 가치들이 사회 안에서 구현될 수 있는 기본 문제의식이 절실한 시대
- 사람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문화의 기본가치에 충실한 문화비전을 제시

4

문화비전 2030 수립의 배경과 의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틀을 갖춘 국가 문화정책 보고서
- 2004년에 발표된 '창의한국'이래 처음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틀을 갖춘 국가 문화정책 보고서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문화정책 보고서
- 문화예술계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블랙리스트 사태와 위계와 권력에 의한 예술계 젠더 폭력을 고발하는 미투운동(Me Too movement) 이후에 발표된 만큼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담은 문화정책 보고서

민간 전문가가 작성하고, 정부가 수용한 문화정책 보고서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새문화정책준비단을 중심으로 22차례의 전체회의와 분과별 현장 토론회, 문체부 장관 및 담당자 워크숍, 100인 집담회, 50인 모둠 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작성하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식 발표(2018년 5월 16일)

개방형, 진행형 정책보고서
- 이전에 발표된 모든 정책보고서와의 차별점

5

문화비전 2030의 주요 내용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경쟁과 효율보다는 사람과 생명이 먼저인 문화로
- 개인의 생각과 권리를 존중하고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젠더불평등에서 젠더평등의 문화로
- 젠더폭력에 대응하고 젠더감수성을 중시하며 젠더평등의 문화환경 마련

4차 산업혁명시대, 인간 소외가 아닌 인간 감성의 문화로
- 모두가 창의적인 예술가, 혁신가가 될 수 있는 사회

일 중심에서 쉼이 있는 문화로
- 쉼과 여유를 통해 개인과 사회에 내재된 창의성을 회복

갈등과 혐오에서 협력과 다양성의 문화로
-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문화적 가치들이 공존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의 문화로
- 각 지역의 문화적 분권과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분권형 문화정책으로 이행

불공정과 독과점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로
- 창작, 유통, 향유 각 단계에서 연계된 사람들에게 공정한 보상이 주어지고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지속이 가능한 생태계

6

문화비전 2030의 주요 내용

비 전	사람이 있는 문화
가 치	자율성 / 다양성 / 창의성
3대 방향 9대 의제	개인의 자율성 보장 ①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② 문화예술인. 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③ 성평등 문화실현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④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⑤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⑥ 지역문화분권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 ⑦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⑧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⑨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문화비전 2030의 주요 내용

문화비전의 3대 가치
-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문화기본법' 제2조 참고)
- 문화기본법 제2조 : "이 법은 …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대 가치의 목표는 '개인의 자율성의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의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
- 자율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문화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자율성은 스스로 문화의 주체가 되고, 다양한 문화취향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
- 다양성은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적 힘을 펼쳐나가는 것
  국적·인종·종교만이 아니라 세대·성·성차를 아우르고, 나아가 예술의 크고 작은 집단들이 서로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
- 창의성은 문화콘텐츠를 육성하는 산업 역량만이 아닌 사회가 혁신하는 데 있어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창의성은 교육. 복지. 도시재생. 통일 분야에서 문화가 사회발전과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

문화비전 2030의 주요 내용

개인의 자율성 보장
- '첫걸음 문화카드' 지원, '문화놀이터' 사업, '나도 예술가'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인/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
- 가칭 '예술인지위와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고용보험 실시 등

성평등문화 실현
- 차별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여성이 문화예술계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언어와 전통문화의 보호, 관광과 체육 분야 활동 확대 등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 표준계약서의 의무화, 문화콘텐츠 유통불공정 행위 해소, 공정한 스포츠문화 환경 조성 등

지역문화분권의 실현
- 문화도시 50개 선정, 협치를 위한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립 등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 창의적인 예술교육, 문화 R&D 확대 등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을 확대
- 남북문화교류 협정체결, 남북문화동질성회복 프로젝트 등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 창의적인 혁신학교 설립, 창의적 문화일자리 확대 등

문화비전 2030의 주요 내용

사람이 있는 문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 비전 실행 협치 방안

2. 문화행정조직 혁신

3. 법제도 개선과제

4. 중장기 재정전략

➡ **별도 자료 참고**

지역문화 현장의 고민

지역문화 현장은 '전문인력 및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 부족', '취약한 지역문화 연구 기관 및 연구 인력', '지역문화예술 정보 및 통계 생산 시스템 부재', '관주도 또는 관주도의 형식적인 거버넌스', '시설 건립 중심의 문화정책', '지역 경제에만 몰두하는 축제' 등으로 인해 기초는 부실하고 겉만 요란한 형국이다. 게다가 가뜩이나 적은 문화 예산을 중앙정부 사업에 매칭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기획은 말잔치로 끝나거나 겨우 흉내만 낼 뿐이다. 이런 와중에 전문성을 기반으로 현장과 밀착하여, 부서 간 칸막이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어려운 사업을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펼쳐나가고자 했던 지역문화재단 본연의 역할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상당수의 문화재단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택배 사업소로 전락했다"는 등의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듣고 있다.

지역문화 현장의 새로운 가능성

- '지역문화 분권'은 지역문화자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문화 환경, 정책, 체계, 사업 등 지역문화 전반에 걸쳐 새로운 상상력과 기획 요구하며, 그 중심에 '지역문화 자치'가 자리
-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여받은 권한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 준비 부족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양될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지금부터의 준비가 중요

지역문화 자치 기반 구축과 로드맵 작성 및 실행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설정

지역문화자치 기반 구축

문화정책 전담기관,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추진

- 문화정책 조사, 연구, 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자치를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 및 실행 체계 구축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5 수립에 참여
- 문화기본법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자치 기반 구축

지역문화협력체계 구축

- 숙의를 통해 지역의 문화진흥을 도모하는 공공 기구 조직,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한 심의, 결정 기능을 확대, 강화
- 성별, 세대별, 연령별 균형있는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구성을 다양화
- 필요시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 확보, 정책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 가는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및 조례 제정 등 지역문화협력체계의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광역문화재단의 폭넓은 지원 필요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2조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기구, 광역·기초문화재단,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

지역문화자치 기반 구축

지역의 문화인력 양성과 활동 지원

- 지역문화인력양성 전문기관 지정 추진
-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교육과 일자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청년들이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

지역문화자치 기반 구축

2019~2020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 지역주관기관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지역 문화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효율적으로 사업추진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양성기관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우수한 역량을 갖춘 관련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할 지역문화인력 및 매개자를 발굴·육성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문화자치 기반 구축

지역문화 재원의 지속적인 확충 방안 마련

- 지역별 문화진흥에 필요한 예산의 정부지원 확대
- 지역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재원으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의무화와 운영 지원
  ※ 포괄보조금 등 기금 조성 및 운용을 위한 재원대책 적극 강구
- 지역문화 재원 발굴과 지속적인 지역문화 재원 확충 방안 관련 연구 추진
- 참여문화예산제도 도입
-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일정 비율 출연을 의무화하는 지역문화재단 총액예산지원 제도화 추진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조정 및 기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문화 자치 기반 구축과 로드맵 작성 및 실행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조정

- 광역문화재단의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 지역의 문화기관, 기구, 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 문화예술인과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사업을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확대
- 시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누구나, 어디서나 문화적 삶이 가능하도록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조정 및 기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기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 광역문화재단은 축적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기초를 아우르고, 함께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제공
- 광역문화재단은 기초와 역할을 나누고,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이 아닌 협력’의 원리에 따라 기초로의 분권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사업 추진체계와 협력체계를 구상(‘보충성의 원리’와 문화헌장의 ‘지역 문화 창달의 원칙’)
- 보충성의 원리 : 행동의 우선권은 언제나 ‘소단위’에게 있는 것이고, ‘소단위’의 힘만으로 처리될 수 없는 사항에 한해서 ‘차상급단위’가 보충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 문화헌장 7. (지역 문화 창달의 원칙) … 지역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일은 주민의 자주적 참여와 주민 자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VOLUTION
EVOLUTION
REVOLUTION

3부

사람이 있는 문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 비전 실행 협치 방안
2. 문화행정조직 혁신
3. 법·제도 개선과제
4. 중장기 재정전략

01 비전 실행 협치 방안

제안 배경

"정책과 제도, 수립과 운영의 방식이자 목표로서 협치"

- 협치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 작동에 민주주의를 더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
- 정책수혜자들을 문화정책 운영의 주체적 행위자로 설정하고, 정부는 이들의 참여 강도와 정보 균형을 유지하게끔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개념으로 협치체계가 조성되어야 함
- 협치는 공공결정 과정의 모든 것임
  –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획 단계부터 평가 환류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함
- 협치의 제도화가 필요함
  – 협치를 위한 조직, 협치를 위한 지원조직 등이 있어서 상설적 · 조직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현황

▸ 새문화정책준비단이 문화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사안을 선택하는 숙의 과정으로 개최한 정책포럼, 현장토론회 등에서 행정에 대한 불신과 개혁의 요구가 노골적으로 드러남

▸ 개별 정책사업 내용의 유효성 이전에 문화행정 · 정책운영의 방식과 지향점에 대한 큰 틀의 혁신이 우선되어야 문화비전의 유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음

▸ 문화행정을 바라보는 불신과 불편함

- 정책이라는 큰 골조 안에 지역과 현장과 공동체, 예술가를 퍼즐처럼 끼워 맞추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불편한 인식
- 참여라는 미명 아래 이뤄진 사업 안에서 성과로 불리고 대상화되어 주체에서 객체로 전복되는 상황 반복
- 공급형 행정구조와 정책적 통치행태로 지칠 대로 지친 정책수혜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퇴행적인 예술독재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정책 운영구조 개혁에 대한 요구

▸ 현장성 확보와 거버넌스

- 문화예술기관의 관료주의적 · 기능주의적 운영은 계량화 중심의 성과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그 자체로 전문성 상실과 현장성 부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함. 따라서 정책수혜자들이 정책수립과 운영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사업구성과 집행의 유효성 · 투명성 확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요구됨
- 현장의 문화예술 주체들과 정책기관 간 책임 · 권한 · 역량을 공유해 정책운용의 위계적 체계를 해소하고 현장과 문화예술기관이 유기적으로 관계하는 바탕을 마련해야 함

▸ 민주사회에서 문화정책의 요체로서 협치

- 문화정책 수립이나 운영과정을 시민사회에 개방해야 함. 문화정책의 실질은 시민들의 참여로 결정하고 정부는 그러한 결정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하지만 대부분 정책결정 과정은 행정관료가 주도하거나 합의제 외곽기관이라는 형식만의 거버넌스 체계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실제 문화정책 과정에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은 단순히 민간위원의 참여라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참여를 넘어 실질적으로 문화(정책)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을 확보해야 함

> 현행 문화기본법은 문화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 개발을 하는 전담기관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과 같은 외곽기관의 지정(제11조)에서 문화예술정책의 핵심기관으로 설정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제12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결정의 틀을 마련했으나 그 어디에도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한 관 · 시민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나 그 운영을 위한 이사(임원) 구성 또는 이를 견제하는 별도 조직의 설치/구성 등을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정해 놓은 사례가 없음
> 문화기본법이 마련한 규율은 기관의 설치와 수권규범 등 권력 분배에 관한 사항이 전부이며 이렇게 분배된 권력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규정은 전무한 실정임

문제점

▸ 통합적 정책협의 채널 부재, 중앙정부 중심의 위계적 전달체계

- 공급자 관점, 중앙정부 주도 획일화된 사업 · 예산 운용
  – 현행 예술정책운영체계는 상위기관의 규정성이 강력하게 작동되는 체계로 정책적 협의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며 중앙과 지역 간 재정분담과 행정서비스 전달통로로 구조화되어 지역문화재단 등 중간지원기관의 사업운영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예술현장, 시민 등의 수요자 정책 반영이 불가능한 체계

• **지역과 현장의 정책수요가 반영되지 못한 하향식 운영체계**

– 국비 · 지방비를 매칭해 지역협력형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인데도 사업별 재원배분 기준의 정책적 일관성이 미흡함. 지역 · 사업영역별 정책수요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정책적 재원배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 현재와 같은 단년도 · 단위사업별 재정운영 원칙을 중기적 관점에서 지역별 재정협약에 따른 포괄적 문화재정 교부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현장의 참여구조가 배제된 정책작동체계**

• **공공부문 주도 · 공급자 중심 정책운영체계에서 민간영역 · 예술현장은 구조적으로 배제된 상태**

– 수직적 관료제의 문화행정체계상 민간 · 예술현장 주체들은 협치와 거버넌스의 공식적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고 지원사업의 수혜자, 문화향유자로서 호출되는 상황

– 문화민주주의 맥락에서 현장의 예술인, 시민들은 스스로에게 부여된 문화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정책운영의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어야 함

– 정책결정과정에 적용되는 전문가주의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참여적 문화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함

– 문화부와 예술위원회 등 중앙의 문화정책기관은 정책형성과 평가, 지역단위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사업 추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예산과 사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관이 주도하는 협치는 민은 자문하는 들러리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큼**

–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협치 방식이 필요

– 협치가 일시적인 자문위원회, 토론회, 공청회 등으로 형식화하거나 관료들의 행태를 정당화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민에서는 불신이 높고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음

개선 방향

- ■ 통합적 · 상설적 정책협의체계 마련
- ■ 다양한 형태의 민간조직과 협력
- ■ 중앙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분산 · 이양
- ■ 정책수혜자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

▶ **문화정책과 지원계획의 수립과 운영 양자에 걸친 협치체계 개발과 정비 작업은 무엇보다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항**

–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가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가 일정한 틀 안에서 구성한 협업관계 또는 양자 간의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지향함

– 정부는 공적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추출하거나, 정책 · 서비스 우선순위를 선정하거나, 공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급방식을 발견하는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둠

– 결정 권한은 협력자인 시민사회에 위임하고 정부는 그 결정을 위한 정보와 조건들을 구성 · 제공하는 방식이 타당함

▶ **통합적 · 상설적 정책협의체계 마련**

– 정책작동체계에 포함된 다양한 운영주체가 참여하는 통합적 정책협의 기구를 설치하여 상설적 정책협력 네트워크로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부 직속 기구로 설치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예술현장 등의 대표성을 기반으로 구성

– '정책계획의 수립'과 '평가환류' 단계를 중심으로 통합적 조정, 의사결정 권한 부여

▶ **분권형 문화예술지원체계**

– 사업별 특성과 정책수요에 따라 사업 · 예산 권한을 중앙→광역→기초로 이관 · 이양

– 현 체계상 사업단위로 예산이 교부되는 운영방식을 실제 사업 운영주체인 광역 · 기초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포괄적 보조금으로 운영할 수 있게 개편

– 중앙 지원기관과 광역문화재단 간 정책적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광역 단위 정책사무와 예산을 광역문화재단으로 이관하고 생활권역 중심의 정책사업은 기초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개편

> 기초지자체 단위는 생활권의 일상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촉발되고 장려되도록 미시적 제도와 조직의 장을 마련하는 일에 전념하여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정책의 일선으로서 역할을 함
> 광역과 중앙은 기초-생활권 단위에 기획 권한과 포괄적 예산집행의 여건을 제공하면서 기초단위가 대처하기 어려운 예술창작지원과 문화산업 지원을 뒷받침한다.

▶ **민관 거버넌스 정책패널제도 마련과 협치 인식 확산**

– 당사자주의에 입각 현장 예술인들의 정책집행, 심사, 평가 참여제도 마련

– 전문가주의의 위임 대표성 보완, 활동분야 · 성별 · 연령 등을 고려해 비례대표성에 기초한 정책패널 구성

– 문화향유권자로서 국민들은 직접 또는 국회 등을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 제반 문화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함

▸ 관료주의적 성과관리 지표 지양: 현장성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 기능 강화

– 행정편의성을 배제하고 변화하는 현장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업성과 위주의 관리 지표체계를 변화시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사업 평가의 계량적 의존도를 해소하고 사업 평가 운영을 실물지표에서 가치지표로 선회하는 작업 필요

– 사후 평가 위주의 계량화에서 벗어나 연구 기능 등을 확보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표개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마련

▸ 현장과 소통을 구조화하는 소위원회 등 상시적 플랫폼 기능 강화

– 성과 관리의 핵심을 이루는 정부부처 등 상급기관의 감독과 지휘 권한을 현장의 요구와 미래 가치 실현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등 상시적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장성이라는 개념이 구조화되어 기관 내에 흡수될 필요가 있음. 이로써 문화예술기관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여 문화예술 현장과 문화예술 정책 사이의 괴리를 줄임

– 현장과 소통 부족은 현장의 역량을 기관의 자산이자 역량으로 끌어오지 못함으로써 정부부처와 관계에서 위계성을 강화하게 만듦

– 문화예술 현장과 소통 부재는 정부부처와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도 상실하게 만듦

– 소위원회 등 기관과 현장 간의 플랫폼 기능을 활성화해 현장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기관 자체의 플랫폼화 시도

실행과제

▸ 문화비전위원회 설립을 통한 『문화비전2030』 실행계획 체계적 추진

– 『문화비전2030』의 지속적·안정적 실행을 위하여 민관협치조직을 설립 및 운영

▸ 문화의제를 사회에 반영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기구 운영

– 현재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의 장관 등 14개 부처 장관이 참여, 정부의 사회보장정책 전체를 심의하는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총리)가 운영 중임

하위에 국민 여가 증진, 예술교육, 성평등, 예술노동 등의 주요 문화정책개발에 대한 세부 전문위원회를 두어서 예술교육, 고용과 여가, 문화의 조화로운 삶의 정책적 설계, 지역 계층 성평등을 넘어서는 문화복지와 관련 현안 협력사안의 일상적이며 정례적인 협의가 가능토록 함

▸ 중앙, 광역, 기초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 마련)

– 숙의를 거쳐 각 지역의 문화진흥을 도모하는 지역 공공기구로서 중앙, 광역, 기초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한 심의 기능을 확대 강화

– 성별, 세대별, 연령별 균형 있는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주민, 문화예술인, 사회적 약자(소수자), 문화 관련 기관과 단체 관리자, 지역문화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

–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필요시 업무 지원 전담기관 지정

–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해 설치 근거 마련

▸ 문화정책에 대한 사후적 통제 가능성 확보

<u>문화정책을 단순히 행정청의 자유재량으로 규정하는 현재의 법 상태에 대한 근본적 치유가 필요</u>

– 문화예술지원은 문화국가와 사회국가의 틀에 따라 국가의 재량권력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기속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정책에 대한 사후적 통제, 특히 사법적 통제 가능성을 대폭 확대해야 함

–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상대방이 존재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결정할 경우 결정권이 있는 사람/기관은 그 결정의 이유와 근거 그리고 결정과정에서 공정성 · 투명성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지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결정과정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 특히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들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폭넓게 부여해야 하며, 이들이 경우에 따라 사법적 구제절차에 호소해도 문화정책의 적정성, 불가피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고인 행정청도 더불어 부담하는 체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옴부즈퍼슨(Ombuds-person)과 같은 고충처리담당기관을 설치하여 좀 더 간소한 방식으로 사후적 통제 장치를 확보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협치박람회 또는 보고회 개최

– 협치 성과를 민과 관이 공유하여 축적해 나가는 활동으로 협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도모

▸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방형 기관 운영 제도 마련

<u>문화정책담당직의 개방</u>

– 블랙리스트와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사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예술정책관과 같은 직무영역은 관료의 순환근무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 개방하여 관료화를 막고 이를 중심으로 각종 지원사업의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u>공공행정 각 부서에 협치 담당 인력 배치 · 협치 전문인력 양성</u>

– 협치는 갈등 조정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통을 위한 상시적 업무가 필요하며 관련 전문가가 필요함. 행정도 알고 현장의 속성도 이해하는 협치를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함

▶ 『문화비전2030』 보고서 영문번역 및 영문보고서 발행
– 각국 문화부와 유네스코 본부에 제공

▶ 『문화비전2030』 정책과제별 협치기구 요약

정책과제		협치기구와 제도
•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인 권리보호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호위원회
• 문화예술인/종사자 노동권과 인권 강화		▶ 문화예술노동권위원회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호위원회 내 소위) ▶ 예술인복지센터
• 예술인복지 통합정책 수립과 확산		▶ 문화예술노동권위원회 ▶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총리)
• 국가문화정책 협치 강화	범부처차원의 문화정책	▶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총리)
	문체부 및 산하기관 문화정책	▶ 문화비전위원회
		▶ 문화예술지원기관협의회
		▶ 협치박람회/보고회
		▶ 문화정책담당직 개방제도
		▶ 옴부즈퍼슨(Ombuds-person)제도
• 문화다양성 정책위상 강화		▶ 문화다양성위원회
•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 지역문화참여예산제도

02 문화행정조직 혁신

제안 배경

조직혁신이란 문화행정제도 전반에 대한 '권력기관으로부터 문화정책의 자율성과 합리성 확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문화행정체계의 정상화', '문화예술전문기관의 독립성과 기관 내 민주적 운영체계 확보', '국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참여 및 비판에 기초한 문화행정 민주화' 등의 혁신 조치가 엄중하고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문화비전의 과정이자 결과물'

현황

▶ 블랙리스트 사태, 미투 운동 등을 비롯하여 국가 문화행정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과 본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

- 블랙리스트 사태는 '권력기관 중심의 문화정책 이권화', '국민들의 참여와 비판 차단 등 문화민주주의 훼손', '표현의 자유와 문화다양성 등 문화기본권 침해' 등 심각하고 지속적인 문제점이 문화행정 전반에 걸쳐 구조화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음
- 미투 운동의 경우 문화행정 내의 성평등 구조 확보뿐만 아니라 문화행정 전반에 걸쳐 문화다양성, 젠더 등을 둘러싼 새로운 감수성의 행정문화를 요구함

▶ 새로운 문화비전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려면 비전이 제시하는 '내용의 새로움'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조직의 혁신'이 동반되어야 가능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문화행정 조직들은 새로운 문화비전이 제시하는 의제들, 내용들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경직되어 있고 관료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
- 이에 조직 혁신은 단순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 편재를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적 정체성, 비전, 역할, 일하는 방식 등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또 하나의 핵심 과제'로 이해되어야 함

문제점

▶ '사람과 문화적 가치가 부재한 문화행정 조직 및 기관 운영': 청와대, 국정원 등 국가 권력의 문화행정 조직

통제와 도구화

- 이명박 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 8),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2013. 3) 등 문화정책/행정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과 통제 반복
  - 헌법, 「문화기본법」 등이 명시한 문화국가의 원리, 문화예술인의 권리 등에 대한 국가권력의 일상적 침해 구조가 존재
-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외부 권력의 압력과 통제로 문화적 가치와 원리를 벗어난 문화행정이 반복됨
  - 국가 문화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공공기관보다는 청와대, 국정원, 기획재정부 등이 중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형적 문화행정 구조
  -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 권력에 의해 문화행정 조직과 기관의 자율성, 문화적 가치의 훼손 등이 반복되고 일상화되어 발생한 국가조직 범죄의 결과물

▸ '자율, 분권, 협치'보다는 '통제, 공급, 지시'에 익숙한 조직구조와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과 문화예술지원체계의 자율성 침해

- 현행 문화행정 체계는 '청와대–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공공기관(소속기관)–지역문화예술기관–민간문화예술계'로 위계화 · 서열화 · 구조화되어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음
  - 문화행정 조직과 기관은 현장 문화예술 생태계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매우 중요한 분야
  - 현재의 문화행정 조직과 기관은 문화적 가치가 아닌 권력구조와 예산 권한에 따라 정책(사업)과 지원이 결정되는 전근대적 운영 반복
- 문화 환경의 변화에도 중앙정부 조직과 기관 중심의 문화행정으로 공공기관, 지역 지원기관, 현장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일방적인 공급정책(사업) 반복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처에서 인사권 · 예산권을 바탕으로 소속기관을 일방적으로 관리하며 통제하기 수월한 행정구조
  - 문화예술지원 경로 전반에서 중앙정부의 조직과 기관이 협력 주체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함
- 국가 문화행정 전반(정책의 수립 · 집행 · 평가 등)에 대한 개방성, 투명성 등 부재
  -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확인되듯이 문화행정에 대한 참여 · 평가 등 사회적 통제구조가 작동되지 않음

▸ 참여와 협치가 부재한 문화행정 구조

-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대다수 문화행정 조직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됨
  - 대다수 국가 문화행정 조직과 기관에서 위원회, 이사회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되지 못한 채 형식화됨

  - 블랙리스트 범죄와 연계되며 더욱더 심각하고 비민주적인 문화행정이 반복됨
- 대다수 문화행정기관에서 협치를 통한 사회적 통제 부재. 이에 지원정책 · 심의 · 집행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블랙리스트 · 화이트리스트 범죄 작동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대다수 문화예술지원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됨
  - 일방적인 기관 운영에 따라 정책 · 심의 · 집행 등의 원칙과 절차가 무력화됨
  - 지원 사업 폐기, 심의위원 풀 통제, 지원 절차 개입, 심사 결과 조작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 발생
  - 문화예술 지원기관으로서 자율성, 투명성, 협치 역량 등이 심각하게 퇴행된 상황

개선 방향

■ 국가문화정책의 정상화 ■ 문화행정의 협치 기반 제도화 ■ 문화기관의 독립성 보장

▸ 국가 문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적(정부 내) 역할 재조정 · 정체성 확립
  -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개별 문화사업 관리 및 통제'에서 '국가 문화정책 기획조정 및 협치'로 정체성 확립
  -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의해 일상화되어 있는 문화정책/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 개혁. 이를 위해 문화 관련 국정운용 의제, 부처 간 협력 사업 등에서 문화정책 주무부처의 국정 참여와 권한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역할을 '국가단위 문화정책 기획조정, 국정운용의 문화적 가치 확산, 국가단위 문화사업 관련 부처 간 협력, 전국 단위 지역문화 연계, 문화 관련 국제 교류, 문화 관련 연구개발 등'으로 확장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재구조화

▸ 문화정책과 국정홍보 기능 역할 재정립
  - 표현의 자유, 문화다양성 등을 핵심 가치로 운영하는 문화정책 기능과 국가정보에 대한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소통 · 협치를 핵심가치로 하는 국정홍보 기능과 역할 재정립에 대한 검토 필요
  - 폭넓은 의견 수렴 등으로 부처 간 또는 부처 내 업무 조정 등 문화정책과 국정홍보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도출

▸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을 개혁해 소속기관 자율성 · 전문성 확보

– 중장기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문화기관/국공립 예술단체들의 자율성 ·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 제도 전면 검토와 방안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처들이 소속기관을 통해서 단위별 사업을 지시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위계적인 행정구조와 문화를 개혁하여 '소속기관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간, 부처 간, 국가 간 문화정책 기획조정 능력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구조 모색

– 소속기관과 지원정책의 자율성 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료화된 조직구조 등과 관련하여 핵심적 원인으로 비판받아 온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예술지원과와 소속기관 사이의 위계적이고 비효율적인 직렬 구조' 해체

실행과제

▸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구조를 개혁하고 협치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실행

– 다양한 국민, 문화예술인, 전문가 등의 참여와 협치는 블랙리스트 사태와 같은 국가조직범죄, 권력형 부패 등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행정개혁

– 현재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국가 문화행정 조직과 기관을 개혁하고 '자율, 분권, 협치'에 기반한 문화행정을 펼치려면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협치정책의 수립과 제도화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치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 문화행정 조직과 기관 관련 '참여와 협치의 원칙', '정보공개의 책임' 등을 문화기본법에 명시

– 문화행정 조직과 기관의 의무와 책임으로 '문화행정에 대한 국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참여와 협치 보장'을 문화기본법을 개정하여 명시

– 협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 책임 의무화

– 정보공개에 관한 원칙과 범위 재설정: 청구행위 이전에 사전 공개 원칙 명시

▸ 국가 중장기 재정 수립, 정부기관 평가 등에 문화 분야 전문가 참여 보장

– 국가 단위 정책수립 과정에 문화적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문화 분야 전문가 참여 의무화

▸ 참여와 협치에 기반한 문화행정 평가와 환류체계 구축

– 평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확보: 시민추천 시스템 도입, 평가위원 선정 과정 공개, 전직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임명 지양 외

– 평가에서 국민참여, 협치제도의 실질적 도입: 국민평가단 운영, 실질적 배점 부여 외

– 문화행정 조직과 기관에 대한 평가지표 · 평가체계 개혁

▸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조직 혁신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정책 의제와 미래비전을 창출하는 정책 총괄기관으로 장르 중심에서 예술생태계를 형성하는 요소 중심으로 조직과 업무 개편: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장르별 예술지원과 운영에서 예술가권리보호, 예술과 타 분야 정책 협력/기획조정 등의 업무 중심으로 조직 구성과 운영 전면 재구조화

– 문화혁신 정책 기능 강화: 문화의 장기비전과 사회 분야의 기획 조정, 남북통일 대비, 새로운 기술혁명과 경제구조에 대응하는 문화정책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혁신 분야의 조직 신설 · 강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독립성 보장

– 1차적으로 법 개정 없이 즉각적으로 가능한 기능적 독립보장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원 사업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고 지역 간, 부처 간, 국가 간 정책기획조율 기능 중심으로 전환

– 2차적으로 법 ·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와 방안 마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제외하여 장관임명이 아닌 예술위원 호선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게 함

– 국가인권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법적인 독립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방식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 진행

– 예술지원체계에서 '문화예술위원회'가 갖는 위상과 역할은 중요한 만큼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되 강한 공적 책임을 주고 국민(예술계)의 관리 ·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제반 체계 개편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율성 ·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혁신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율성 · 전문성 · 미래지향성 강화

– 각각의 장르별(게임, 음악, 방송, 융합콘텐츠, 애니메이션, 캐릭터, 패션 등) 조직을 보강하고 장르별 지원정책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

– 장르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급변하는 콘텐츠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선 필요

▸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조직 개편

– 아시아 문화허브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집중화

–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조직 개편 기본방향의 핵심어는 아시아권역, 문화아시아, 협력과 공존, 아시아평화, 아시아 예술의 허브

– 아시아 예술인들의 참여 확대, 공동창작의 허브 기능 강화

– 미래의 기술혁명이 주도하는 예술융합의 실험실

– 연구소를 강화하여 '아시아 문화연구'의 거점 역할
– 아시아 문화 전문인력의 교육과 교류의 장 역할 확대

▸ **창의적 예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체계적 지원**

– 1992년 개원 이래 한국예술인재 양성의 견인차 역할을 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새로운 발전 수립이 필요
– 새로운 예술환경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예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년 전 완료된 현행 6개원 체제를 확대할 필요
– 한예종은 세계예술대학 랭킹 46위(2016년 기준)로, 2030년까지 10위 내 진입을 목표로 글로벌 예술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갖기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
– 한예종의 통합캠퍼스 이전 추진으로 통합적인 예술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근본 환경 마련

03 법·제도 개선과제

현황

▸ 2018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소관 법률은 72개임

부문(수)	법률
문화예술부문 (28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제문화교류진흥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예문화산업진흥법 국어기본법 공연법 도서관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예술원법
문화예술부문 (28개)	문학진흥법 문화기본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예술인 복지법 지역문화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점자법 한국수화언어법 향교재산법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에 관한 법률(교육부 공동소관)
문화콘텐츠산업부문 (18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부문(수)	법률
관광부문 (5개)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체육부문 (12개)	경륜·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생활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 씨름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학교체육 진흥법(교육부 공동소관) 바둑진흥법
사행산업부문(1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문화재청 (8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 문제점

▸ 일관된 법률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정치적 · 행정적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세분화된 진흥법이 남발되어 법률들의 위상과 목적이 혼재되고 파편화되어 있으며, 연계성과 정합성이 떨어짐

▸ 현행 법 · 제도는 독점문제, 노동권문제 등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며, 그나마도 낡은 틀에 필요한 내용을 꿰어 맞추는 식으로 법률을 보완함

▸ 대부분 법률이 중앙과 행정 중심의 수직적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고, 민간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기보다는 규제와 경쟁을 통한 관리로 용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 단위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문화예술생태계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 부재하며, 중앙집권적 문화행정의 폐해가 지역으로 전가되는 구조임

– 개별 문화예술 법률들이 관료주의 문화행정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어 법정기관이 자율성을 상실하고 문체부 각 실국 관료 시스템의 하청 집행기구로 기능해 칸막이 문화행정의 문제를 기관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극복하고자 한 애초 목적은 유실됨

– 법과 행정체계에 근거한 하향식 사업으로 인한 예술행정의 자율성과 창의성 침해, 문체부 및 산하기관들의 각종 공모사업 남발로 지역문화 현장의 황폐화와 자생력 저하, 민관 협치 및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의 협력과 연대를 지원하기 어려운 사업구조, 지역문화기관(광역 · 기초재단, 문화원, 문화의 집 등) 간 상호 협력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야기함

➲ 법체계 정비 방향과 추진 과제

1) 법률체계의 전면 재정비

▸ **배경과 방향**

– 70여 개에 이르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법률 사이의 체계적 정합성 구축 필요

– 특히 정책 대상 범위와 관련한 '정의 조항'의 정비가 시급함

– 2013년 문화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후속 법제 정비가 추진되지 않은 채 1970년대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을 사실상 모법으로 한 다양한 행정법이 제정·운용되고 있음

– 국가 주체의 진흥의 절차와 근거를 규정하는 '진흥법'에서 '지원법'으로 전환

▸ **추진 내용**

〈제1안〉

– 문화기본법, 스포츠기본법, 관광기본법을 기반으로 관련 분야 법률들의 체계 정비

– 문화기본법에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을 중범위로 설정하여 관련 법률 등 체계 정비

▹ 문화예술진흥법의 '예술지원법'으로 전환과 관련 예술 개념의 정비, 장르별 지원 법체계의 정비. 그 경우 문화지원법 제정 검토

▷ 문화재보호법을 가칭 문화재기본법으로 전환하고 관련 법률체계 정비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문화산업기본법으로 개명하고, 관련 법률체계 정비. 예: 영상진흥기본법 등은 영상진흥법 또는 영상지원법으로 개정
–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률체계 정비
–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기본법으로 개정하고 관련 법률체계 정비

〈제2안〉
– 문화기본법을 체육, 관광 분야까지 포괄하는 법으로 개정
– 문화기본법을 기반으로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 관광의 5대 중범위 기본법을 개정 또는 제정하여 체계 정비

2) 신규 법률 제정

▸ **배경과 방향**
– 문화 분야 법체계 정비 후속 조치로 신법 제정 필요
– 이에 변화된 사회환경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새로운 법률체계 수립이 요구됨
– 문화비전 수립 · 집행과 관련 직제/위원회 신설 사항을 반영
– 블랙리스트 사태, 미투 운동 등 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법 제정 필요

▸ **추진 내용**
– 문화지원법 제정
▷ 예술지원을 제외한 문화 분야 지원을 규율
– 문화비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문화기본법 개정
– 국가예술위원회법 제정
– 예술인 권익 증진 법 제정
– 문화다양성 침해(혐오발언 등) 금지법(예. 차별금지법)
– 남북문화교류협력 활성화 지원법 제정
– 스포츠기본법 제정
– 체육인복지법 제정

3) 현행 법률의 개정

▸ **배경과 방향**
– 초연결사회로 대변되는 정보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사회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 문화다양성이 강조되고 개인의 문화창조 · 문화활동 참여 · 문화향유가 권리로 보장되는 문화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나라를 외친 국민들은 직접 참여와 연대로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 똬리 틀고 있는 감추어진 폭력과 위계를 깨뜨리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이는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는 수직적 구조가 더는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화다양성, 문화민주주의, 자치와 분권, 협치 등 새로운 가치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추진 내용**
– 헌법을 개정해 표현의 자유와 문화권 확대 명시
– 문화권(문화적 권리)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강화→문화기본법 개정
– 예술인복지법을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호법으로 개정
– 문화예술진흥법을 예술지원법으로 개정, 예술 표현의 자유 보호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처벌 조항 신설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문화다양성 정책 총괄부처로서의 문체부 위상 및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문화다양성 정책의 정부 간 협력체계 강화 및 그 법적 근거 명시 등)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문화기본법」과 통합 또는 확대 개정
– 문화기본법 개정(문화비전위원회 설치)
–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하여 지역의 자율적 정책 역량 제고와 협치 근거 마련
– 관광기본법을 관광진흥기본법으로 개정, 지역관광 콘트롤 타워 구축 조항 신설
– 국민체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하여 스포츠기본법 체계에 맞추어 정비
– 조세 관련 법령 개정(문화콘텐츠 연구개발 세제지원, 문화 분야 중소기업 세제 지원 방안 등 마련)

쟁점 과제

▸ 문화기본법 개정 방향과 내용
▸ 예술인 복지법 개정과 예술인 권익 증진법의 조율
▸ 예술 장르 진흥법의 개편 방향

04 중장기 재정전략

국가 문화재정 투입의 필요성

▸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적용

– 문화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한국의 사회적 · 경제적 수준을 고려할 때 국민의 최소한 권리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해야 할 문화적 최소기준을 고려해야 함

– 특히 지역 간 문화적 격차는 문화권이 표방하는 최소한의 문화적 권리를 박탈하게 되고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여 사회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 간 문화적 불평등(격차)과 지방재정 고갈에 대응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의 노력이 요구됨

▸ 문화예술 분야 특수성 및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정부 개입

– 문화예술 분야는 재화의 특성상 시장경제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고 공공재와 가치재(Merit Good) 성격을 가지므로 시장실패 · 보완을 위해 정부의 공공지출이 중요함

– 이와 같이 문화예술 분야 재화의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다양한 공공적 의미(외부효과, 역량강화, 형평성, 효율성 등)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함

네처(Netzer)의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도서관과 예술회관 건립, 문화적 도시재생의 결과로 해당 지역에 관광객이 증대하고, 이로써 지역 수익을 창출하며 일자리도 확충할 수 있다는 문화예술 영역의 경제적 배후효과를 입증한 주장

보몰(Baumol)과 보웬(Bowen)의 비용질환(Cost Disease) 가설
문화예술은 노동집약적 분야로 기술발달에 따른 노동절감 ·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영역이므로, 이러한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당 분야가 도태되지 않도록 여타 분야와 격차를 보전해 주는 공공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문화 분야 사업의 성과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특성과 탁월성에 대한 성과측정의 한계, 효과와 인과성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적정한 공공 문화투자의 수준(문화재정 규모)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함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
경제적 조건과 삶의 질은 비선형 관계: 소득이 많을수록 행복감이 높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 포화점 존재
1인당 GDP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이상의 국가에서는 기본욕구(의식주) 이상의 상위욕구 충족이 필요(Inglehart 1997; Kenny 1999; Frey and Stutzer 2002; Layard 2003, 2005)하며, 소득 외에 행복감을 강화하는 요인은 문화적 여건이나 여가활동(Kelly et al., 1986)임
한국은 1인당 GDP 2만 9,000달러의 경제대국으로 사회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상위 욕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격차보다 문화적 격차로 인한 소외감이 더 큰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 및 영향과 정부지원의 타당성 관계

–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공적 지원이 왜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은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각 국가들은 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정당성을 찾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와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옴

– 미국은 2017년 NEA와 AFTA의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 NEA는 BEA(경제분석국)과 함께 '예술 및 문화 생산위성계정'을 분석해 문화예술 분야는 미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2%를 차지하며, 1998년과 2014년 사이에 기여도는 35.1% 증가하였다고 보고함

▹ AFTA는 미국 전체 비영리 예술산업의 경제적 활동(1,663억 달러 창출/2015년 기준)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460만 개)와 수익창출(275억 달러)을 하였으며,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은 문화예술이 개인적인 삶의 질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개선해 주고 삶에 의미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다고 보고함

– 영국의 DCMS는 지속적으로 문화와 스포츠 등 여가활동 참여의 가치를 추정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함

▹ 문화활동과 스포츠활동에 참여해서 얻는 행복의 가치를 화폐로 추정하면 연간 742파운드에서 1,359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는 문화나 스포츠 활동에 대한 개인적 행복 수준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 향후 소득 증대 효과, 사회행동에 미치는 영향(기부행위)과 같은 사회적 또는 국가적 편익을 제시하는 것으로 입증됨(Fujiwara, Kundrma, Dolan(2014); 장훈 · 윤소영, 2014)

문화재정의 현황

▸ 문화재정의 구조와 규모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예산(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과 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구성됨

– 문화재정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6조 9,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2018년 6조 5,000억 원(전체 대비 1.51%)으로 전년대비 6.3%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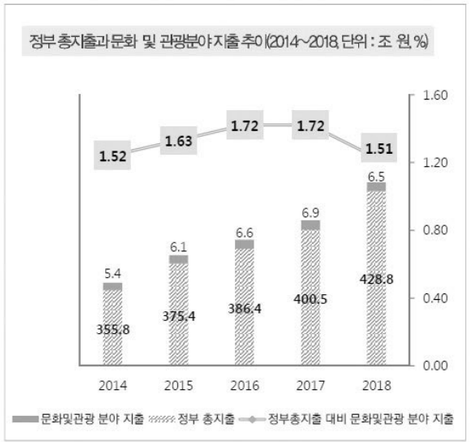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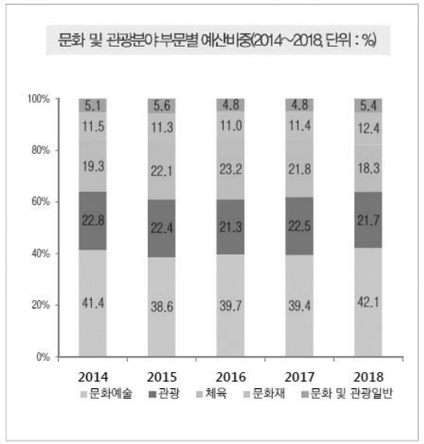

– OECD 국가 대상의 정부총지출 대비 문화예산 비중에 대한 국제 비교 결과, 한국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정부 총지출 대비 문화예산: OECD 평균 2.7%, 한국 2.28%

OECD 평균 대 한국 총지출 대비 분야별 지출(2015년, 회원국 30개국, 일반정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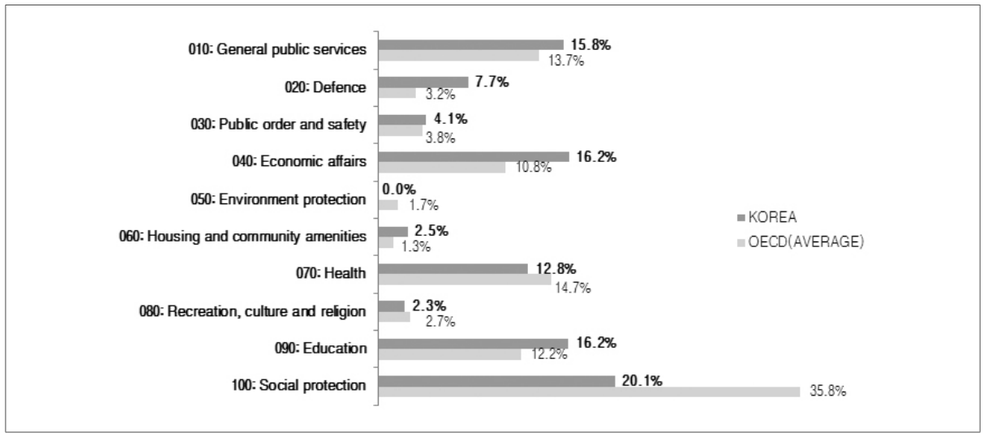

▸ 문화재정의 예산사업과 사업추진 현황

– 2018년 기준 문화재정의 81.4%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과목구조는 프로그램 40개–단위사업 130개–세부사업 343개–내역사업 782개로 구성됨

– 2018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체의 64.1%를 보조사업(지방자치단체 보조 26.1%, 민간보조 38%) 방식으로 추진하며, 직접사업은 36%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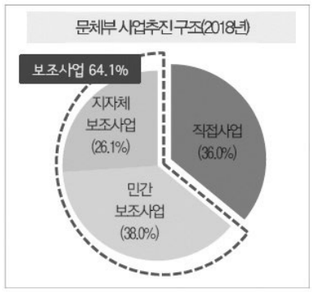

▸ 문화재정 사업의 전달체계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문화예술단체인 13개 소속기관을 지원하고 산하기관(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33개를 소관하고 있음

– 산하기관은 정책을 사업 서비스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방향에 맞춰 직접사업 시행하거나 공모로 사업 시행자와 수혜자를 선정 또는 지역 민간기관(문화재단, 전문단체, 센터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

구 분 (개수)	기관명
준시장형공기업(2)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관광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4)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3)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기타 공공기관 (24)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수준과 격차

• 2017년 기준 지방정부의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보조사업비 41.6%, 자체사업비 55.1%로 구성되어 있음. 보조사업비중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하여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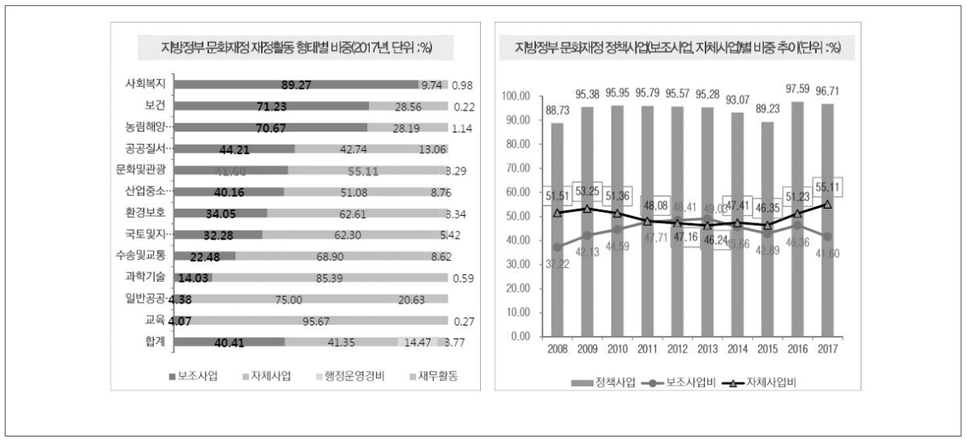

• 2017년 현재 지방정부의 문화재정 비중은 최소 1%에서 최대 20%까지 격차가 상당

지자체 재정 대비 문화재정 구성비(2017년 기준)

구 분	구성비	합계	광역시도	시	군	구
합 계	100%	243	17	75	82	69
1% 미만	3%	8	0	0	0	8
1~5% 미만	51%	125	9	40	18	58
5~10% 미만	40%	95	7	29	56	3
10~15% 미만	5%	13	0	6	7	0
15~20% 미만	1%	2	1	0	1	0

문제점

▶ 수요자 중심과 현장중심형 정책을 개발하는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 미비

– 국민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려는 국가의 문화정책이 꾸준하게 진행되었으나 공급자 위주의 분절적 서비스 공급과 경제적 성과지표에 근거한 성과관리에 집중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정책으로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

– 제공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예산이나 공급자의 기획에 근거하여 기능과 성과를 평가하던 것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개인'의 문화적 권리에 집중하는 문화정책은 정책과 사업의 수립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시설과 프로그램의 운영이 다양한 요구에 맞게 재편될 필요가 있음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의 비물질적 영역으로 '문화, 체육, 관광' 영역에 재정적 투자를 해서 개인적인 만족, 공동체 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국민 행복효과 등에 대한 가치와 영향에 대한 연구에 기반한 재정투자의 타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간 문화격차와 지방재정 고갈에 대응한 재원조달 방안 시급

– 지방재정을 자립하기 위한 재정분권의 방향에 따라 정부(중앙–지방) 간 역할을 분담하고 지방이양 사무를 검토하여 지방분권적 수행이 가능한 사업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도록 전환 준비가 필요함

– 특히 지역 간 문화격차나 지방정부의 문화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재원이나 지방재정의 고갈에 대응한 재원조달 방안이 시급이 요구됨

▷ (1개 시도당 평균 문화시설) △서울 · 경기 · 인천(315개) ↔ △14개 시도(118개)

▷ (문화예술 관람률) △서울 · 경기 · 인천(81.2%) ↔ △읍면 지역(65.7%)

▷ 현재 지방정부 문화재정 비중은 최소 1%에서 최대 20%까지 격차가 상당함

▸ 지자체나 민간을 통한 간접수행 방식의 성과관리 미흡

– 문화 분야는 외부효과가 큰 특성에 따라 많은 부분을 지자체나 민간을 통한 간접수행(보조사업) 비율이 높은 실정임. 결국 소액다건형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운용의 비효율성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임

▷ 소액다건형 보조사업은 세분화된 사업 건수대로 사업대상 선정, 집행, 성과관리와 평가 등의 절차로 진행해야 하므로 실제 추진되는 사업비보다 간접비용(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예산계산, 정산 등)이 더 필요한 비효율성이 존재함

– 사업규모가 작아 성과를 엄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고 관리감독의 한계는 평가 없이 답습되는 연례적 지원방식을 야기하여 창작역량이 감소하는 등 사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실효성 높은 사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문화 분야는 공공기관부터 소규모 민간단체까지 다양한 형태의 민간조직이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고 보조사업 지원 기준과 방법(공모/지정)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사업지원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국회, 감사원, 재정운용 평가 등에서 보조방식에 대한 외부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 문화사업은 간접보조사업(재교부)이 다수 발생하는 복잡한 전달체계를 나타내며, 사업 수행주체 결정을 개별 사업마다 상황에 맞춰 지자체나 민간(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결정함

▷ 지자체를 통한 보조사업은 광역시도가 지방비를 매칭(Matching)하고 시도 여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재교부함

▷ 민간을 통한 보조사업은 사업에 따라 공공기관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적합한 민간단체로 재교부하여 공공기관이 행정체계이자 집행체계 역할을 함

개선 방향

▸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확보, 2030년까지 문화예산 단계적 증액 목표(2030년까지 문화예산 3% 실현)

– 현재 문화예산으로는 문화비전2030의 과제들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 따라서 단계적으로 국가재정에서 문화예산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 논리와 전략을 개발.

– 전 국민의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예술인의 창의적 예술환경 조성, 지역의 문화분권 실현, 남북평화와 문화의 국제협력, 국가 성장동력으로 문화콘텐츠를 연구개발하고 한류의 글로벌 열풍을 수렴하는 문화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문화예산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문화재정 설계

–개개 국민의 삶이 중심이 되는 체감형 문화정책 방향에 우선 투자

▷ 기존의 공급자 중심으로 구분된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의 편의와 선택을 중시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에 우선 투자

–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화 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의 타당성에 근거를 둔 정부 지원의 중장기적 재정 설계 필요

▷ 국민의 문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정계획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문화 분야 위성계정이나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 보고서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재정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재정설계의 기초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의 기능과 역할 분담 원칙 마련

– 중앙정부는 정책 수립 · 평가 · 조정 · 제도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과 사업관리 등 실제 사업의 추진단위는 관련 지자체나 산하기관에 이관하되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해 책임을 묻는 성과관리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는 건마다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이 아닌 수요자 욕구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대상별 · 지역별 사업 전체를 계획 · 공급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평가 기능에 집중하되 지방정부 또는 소속 · 산하기관에 포괄적으로 전달하여 자체적인 기획과 계획에 따라 배분되도록 하고 중분류 규모의 사업을 관리 · 감독하는 방식으로 재편이 필요함

– 지자체 · 산하기관은 사업 전달체계로 자율성을 보장하고 세부사업의 직접적 추진주체로서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동시에 엄정한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중분류로 교부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자체, 산하기관이 환경과 여건에 맞춰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 효과성 제고에도 바람직하며, 실질적인 팔길이원칙(arm’s length principle)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음

▸ 문화 분야의 전략적 사업설계 및 사업분류와 사업수행방식 개편

– 중장기적 시각에서 문화 분야의 사업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목표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전략적인 사업설계를 해서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고 효과성을 강조하는 배분구조 마련 필요

▷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분야(탁월성, 전문성)와 소액다건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양성, 보편성) 등의

지원사업 대상을 분류하고 이에 기반하여 중앙과 지자체, 민간의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사업의 전달(보조사업자) 원칙 마련

▷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뛰어난 예술가나 단체, 관광 대상지 또는 상품, 전문체육인 등은 대상이 제한되기에 단순한 개발 · 활성화 목적이 아닌 전문적 무대화나 국내외 진출 · 활동 등에 집중 지원 필요

▷ 많은 국민이 체감하고 향유하고자 하는 목적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다양한 작품개발과 보급, 전 국민 여가편의 증진 등을 위해서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다건형 지원도 필요함

– 사업수행 방식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분야(탁월성, 전문성)는 세부사업으로 중앙이 직접 추진하고, 소액다건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양성, 보편성)는 포괄적 규모로 보조사업을 편성하는 등 사업분류에 따른 전달 원칙 마련

▷ 사업의 특성을 구별할 수 있는 지표(기준)를 마련해 사업을 분류하고, 기준에 따라 적합한 사업전달 방식을 구분 · 적용함으로써 사업지원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사업추진 주체 예측 · 관리 가능)

▶ **프로그램 예산체계 원칙과 개편 방향에 따른 예산 과목구조 재구조화**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과목구조 개편의 기본 방향은 중복 · 유사한 세출예산은 통합하고, 분류가 모호한 경우 합리적인 기준과 범위에 따라 세부 내역사업을 재배치함

▷ 성과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예산체계 원칙에 따라 단위사업은 상호 배타적이고 차별화된 명칭으로 특성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함

– 사업의 재분류는 단위사업 수준에서 기반조성, 육성(창작, 향유, 매개) 등의 구분으로 단순화하고, 세부사업에서는 사업의 질(quality, 수월성)과 양(quantity, 접근성) 차원에서 세분화된 구분을 기준으로 둘 수 있음

– 사업관리의 효율성(사업관리 행정비용 절감, 정책수립과 성과확산 업무 집중), 예산분석과 통계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면 예산서 내에서 최하위 분류체계를 일정 규모의 중분류 체계로 단순화하는 것이 효과적

▷ 재정운용 측면에서 기능 중첩 배제, 정책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축소, 세출규모 감축, 지출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여러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 예산집행 경로(세부사업 단계)를 축소하는 것이 유리함

▷ 이는 부서 간 거래비용 감소에 따른 생산적 능률성, 감독 · 통제 증진에 따른 정치적 책임성 증진, 정책공급의 안정성 증진, 정책조정 증진 등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음

– 세부사업의 정의와 범위, 특징과 재편기준을 마련하고 상위계획과 부합한 수준에서 유사 · 연계 사업은 통합하는 등 예산과목 구조상 사업의 연계성과 체계성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

▶ **문화재정의 주기적인 평가제도로 환류체계 마련**

– 재정전달 기관이 복잡하게 구성될수록 관료화주의 행태로 사업(서비스)이 경직되고 획일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다수의 소속 · 산하기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 검토와 평가 강화가 필요

– 타 부처에 비해 보조사업 수가 많은 문체부는 사전심사 강화, 성과평가 시행 등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체제 강화가 요구되므로 내부적으로 재정사업평가 체제의 정비 필요

▷ 성과지표, 목표치 수준 등은 가장 기초적인 정보로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되려면 추가 분석이 필요하므로 사업평가가 중요

▷ 사업자 선정, 지원 집행 후 성과평가 등 사업지원 효과를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강도 높은 사업관리로 환류체계 마련

– 지자체와 산하기관에 포괄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 · 집행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사업추진 ·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해 책임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적인 사업성과 평가와 컨설팅 기능 확대 필요

– 문화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측정 방안 개발 · 활용, 부처 내 정례적 사업평가 · 모니터링 강화 등 보조사업이 많은 부처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기적인 평가를 중요한 부처 업무로 인식할 필요

의제6 지역 문화분권 실현

“문화분권은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고유한 문화 양식을 보호 · 확산하며, 지역 시민들의 문화향수와 문화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문화정책이다”

-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고(복지), 사람다움(교육)을 가꾸며, 사람답게(문화)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 인간의 품위와 생명의 존엄은 모든 가치 중의 가치이며 개인의 문화 권리와 공동체의 문화 활동으로 구현

- 「문화기본법」 제2조에서는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문화의 기본이념으로 채택

- 개인으로서 시민은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의미를 생산하고 가치를 표현하는 주체. 이는 어디서 살더라도 지켜져야 할 개인의 기본 권리이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역사회가 개인들의 다양성으로 활력이 넘쳐나고 개인과 공동체가 일하며 꿈을 키우는 공간이자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역문화정책은 시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지역과 생활이라는 장소와 공간에서 실현해야 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할과 기능을 나누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권력과 권한, 자원을 분권화해야 함

- 지역분권과 자치관점에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타 부처와 협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함

- 지역문화정책은 민이 주도하고 관이 보완하는 협치로 실현 가능함. 형식적인 자문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 들이 직접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문화적 욕구를 해결하도록 주민 주도로 협치를 제도화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분권과 협치로 지역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시대를 열어야 함

- 문화분권을 차별화하기 위해 지역문화자산의 고유성과 문화적 향유의 보편성을 구현하고, 이를 실행할 문화 전문인력의 확보, 지원기구 및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필요함

대 표 과 제

1. 지역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 조성
2. 지역문화의 고유성 유지 · 발전
3. 지역문화 거점기관의 운영 혁신과 지원체계 마련
4. 문화 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6.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01 지역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 조성

개념

- 문화권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문화기본법」 제4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 사회적 · 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문화기본법」 제5조 2항)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문화기본법」 제5조 1항),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주민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의 본질은 각 지역이 스스로의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펼치는 데 있음.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고, 지역의 환경에 따라 살림을 꾸릴 수 있는 형편이 다름으로써 나타나는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생활문화는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가리킴(「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2항)

추진 배경

-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주적인 재정운영과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으며 문화 분야도 이와 다르지 않음.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은 일상 속의 문화권리를 확보해 문화민주주의의 실현과 개인, 지역, 국가 간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 그리고 참여에 기반한 지역 시민자치 구현과 관련되어 있어 문화자치가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중앙주도 문화재정 운영은 공정성 · 투명성 · 효율성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도 전체 예산 중 문화예산의 비율이 상당히 낮고, 문화를 도구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팽배해 있어 단체장 임기에 맞추어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과 과시성(문화시설이나 건물 건립 등), 선심성(축제나 대형 이벤트, 행사 등) 사업에 문화예산을 집중하는 상황임.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대가 곧 문화 분야의 재정 확충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역문화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지역문화 재원을 확충해 지역에서 필요한 문화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제고하여 문화자치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음. 지역 간 문화재정의 격차에 따라 문화향유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 균형 발전 사업에 집중하여 모든 사람의 문화권을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함
- 분권에 따라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지역문화의 공급과 수요 부문이 결합된 지역문화자치지수를 개발하여 지역문화 여건 진단에 따른 맞춤형 지역문화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일련의 사회변화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긴 결과이며 그 해법 또한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산업화 시대에 유효했던 중앙집권적 체제로는 현재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다원적인 사회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드러남
  - 지역 중심의 사고로 전환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높이고 분권이 실질적인 자원 분산으로 이어지게 하는 정책이 필요함
- 마을문화는 자발적인 참여로 새로운 변화의 촉매제임
  - 마을은 대면적 관계가 일어나고 일상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단위로, 마을 문화활동을 매개로 폐쇄적인 공동체, 파괴된 공동체를 새롭게 구축 또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음
  - 마을합창단, 마을풍물단, 마을축제, 마을오케스트라 등 마을문화를 활성화해 마을 혁신을 도모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뉴딜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역에 남아 법인을 설립하고 지역 주민과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며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성북신나협동조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예술, 교육,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청년단체 유입과 각 단체 재능을 활용한 마을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풀뿌리 문화에 기반해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문화민주주의를 정착할 수 있음
  - 지방자치의 원리는 행정단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 또는 아파트 등 공동체 마을단위로 좁혀 나가는 것에서 시작함
  - 마을이야말로 쓰레기, 주차, 방과 후 돌봄, 환경 가꾸기, 문화유산 돌봄, 공동체 문화 등 일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욕구와 요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단위임
  - 생활문화의 활성화는 마을문화를 토대로 할 때 힘과 역동성을 가질 수 있음
  - 마을문화 활동에 참여하면서 동네 문제를 개선하고 생활정치의 힘을 배울 수 있음

(사례 예시) 주민자치회에 문화분과 개설, 마을문화유산 돌봄 모임, 문화프로그램 운영

-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대다수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음.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높아지고 문화를 향유하는 과정 자체가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되어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하는 한 측면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생활문화를 확산해 일상 속에 문화를 누리는 여가가 있는 삶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문화가 일상이 되는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함
- 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함. 노약자를 위한 문화 전문 공간과 치유, 상담 등의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함

추진과제 01 지역문화진흥 재원의 지속적 확충

- 지역별 문화진흥에 필요한 예산의 정부지원 확대
- 지역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재원으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의무화와 운영 지원
  ※ 포괄보조금 등 기금 조성 및 운용을 위한 재원대책 적극 강구
- '지속적인 지역문화 재원 확충 방안' 관련 연구 추진

추진과제 02 포괄적 보조사업 확대

- 포괄적 보조사업 확대, 성과 평가와 평가 환류 시스템 구축

추진과제 03 지역 주민 참여문화예산제도 지원

- 지역 문화예술인/단체, 기관 및 시설/공간,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의 문화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협치 체계 구축 지원
  – 지역 문화예술인/단체, 기관 및 시설/공간,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 예산 요청
  – 매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과 예산 설명회 개최

추진과제 04 지역문화 정책기반으로서 문화정책 전담기관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활성화

-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조사 · 연구 · 개발 · 집행에 필요한 문화정책 전담기관 지정
- 지역문화 관련 조사 결과와 통계 관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조사 · 연구 · 개발 지원에 필요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 추진근거: 「문화기본법」 제11조(문화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와 개발)

추진과제 05 지역문화자치를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

- 공급 지표 중심으로 설계된 '지역문화지수'에 수요 부문을 결합하여 '지역문화자치지수' 개발
  ※ 공급(시설, 인력, 기관, 프로그램, 문화예술인/단체 등), 수요(문화향유 수준, 만족도, 생활문화동아리 등)
- 지역 간 문화 여건을 진단하고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 · 맞춤형 지원 등 정책을 연계하여 실효성 제고
- 지역문화 실태 조사를 2년 단위 조사로 정례화하고,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실태 조사 의무화

추진과제 06 생활문화를 일상 속에 누리는 여가가 있는 삶의 방향 정립 · 지원 다각화

-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동호회 발표 · 교류 활동 공간, 강사 등 지원
- '문화가 있는 삶'이 실현되도록 '문화가 있는 날' 사업 개선
  – 이벤트 중심의 행사성 사업 지원 지양, 일상생활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전환

추진과제 07 누구나, 어디서나 문화적 삶이 가능한 지역 만들기

- 장기적으로 문화향유 시설이 부족한 지역부터 우선 지원하는 등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 추진
-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문화활동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인력 등 지원

추진과제 08 지역의 문화인력 양성과 활동 지원

- 인력양성 전문기관※을 지정 · 지원하여 지역 청년문화 활동가 · 문화 관련 대학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지역문화콘텐츠를 개발 · 발굴하기 위한 기획 인력 양성
  -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문화 창업 지원(문화예술콘텐츠, 관광 등)
  - 지역에서 문화와 관련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수 있는 인력 발굴과 정주 지원

  ※ 대학,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 기관 · 단체-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확대해 전문인력을 문화시설에 배치함으로써 문화매개자 교육과 일자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 청년들이 문화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문화청년 일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추진–청년 문화활동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문화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화의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

  ※ 문화청년 일만 시간 과정: 준비-진입-활동-정착-재도약-재충전

추진과제 09 읍면 동에 청년 중심의 '문화일꾼' 배치 추진

- 문화일꾼을 읍면동 주민연계 시설에 배치
- 지역밀착형 문화일꾼들의 역할로 생활문화, 문화동아리, 마을미디어 활동 등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권 확대

추진과제 10 지역문화기관/기구, 시설/공간, 문화현장의 네트워크 구축

-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내에 존재하는 시설, 공간, 인력의 연대 틀 구성
- 정보 공유와 자산 공유로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 촉진
- 정보 플랫폼, 인적 네트워크 구축, 공간/시설 공유

추진과제 11 지역문화정보 플랫폼 구축

- 지역문화정보와 생활문화 · 여가공간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 지역문화 현황 등을 기반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활용한 지역별 문화지도 구축 · 제공
- 지역예술인/단체 실태조사 등으로 지역의 문화자원과 문화자산에 대한 데이터 구축
- 전국단위 관광발전 동향을 분석하여 지역 관광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관광발전지수 측정, 지역에서 활용하도록 제공

  ※ 지역관광발전지수(종합지수)는 관광수용력 · 관광소비력 · 관광정책역량지수 등 21개 항목 지수값을 산출하여 지역관광발전 수준 측정

02 지역 문화의 고유성 유지 · 발전

개념

- 지역문화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 ·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 ·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함(「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정의 1항)
- 지역문화의 고유성이란 특정한 지역의 공간과 생활 범위 안에서 역사와 인적 · 물적 교류 단위로서 지역민의 생활문화, 전승되어 온 생활양식과 전통문화, 미래의 창조문화 등을 포괄하는 의미임. 지역문화는 지역정체성의 발견과 그에 근거한 지역공동체의 생성과 지역 발전의 기초가 됨
-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 문화산업 · 관광 · 전통 · 역사 · 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임
  - 정책적으로는 "시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사회성장

구조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를 갖춘 법적 지정도시"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음(2016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도시재생과 문화재생

– 도시재생은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 활용으로 경제적·사회적·물질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임(「도시재생법」 제2조)

– 문화재생은 '각 지역이 지향하는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지역을 재생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제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종합적 정책 또는 사업'임

추진 배경

▸ 200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은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자국의 문화를 유지하고 종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음

– 유네스코는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주요한 행동계획으로 구전 문화유산과 무형 문화유산을 포함하여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과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원주민의 전통지식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현대 과학과 지역 특유의 지식을 서로 결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촉진해야 한다는 방침을 채택함

▸ 문화도시와 문화마을 정책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그동안 문화특화지역 사업과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 왔음. 해외에서도 유럽문화수도, 아메리카 문화수도,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등으로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2006년부터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중앙주도·지역협력형 사업으로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지역중심·중앙지원형 사업으로 부산 영상문화도시 조성사업,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14년부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 현재 총 51개 지역(문화도시형 26개, 문화마을형 21개)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지금까지의 문화도시 활성화 사업은 도시 브랜드 창출, 관광객 유입 등 성과가 존재하나 법적 기반 없이 정부계획이나 정책사업 수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한계가 있음. 그 과정에서 도시의 브랜드 홍보를 강조하여 상대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개선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또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사업 추진으로 지역별 고유한 개성과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존재함. 또한 국토기본계획과 연계한 산업 위주 접근과 하드웨어 건립 위주의 사업 추진이 문제로 제기되어 옴

– 문화적 지역재생은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그 과정에서 도시가 유지되어 온 맥락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역사, 문화,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문화적 지역재생은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물적·인적 토대가 되며 공동체 복원과 회복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음

–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지역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려면 문화적 도시재생 등 문화적 관점에서 혁신적 접근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계획이 필요함

※ 게이츠헤드(영국), 셰필드(영국), 볼로냐(이탈리아), 프라이부르크(독일) 등은 1990년대에 도시재생 과정에서 문화계획을 수립해 문화 중심으로 공간과 도시를 성공적으로 재구성함

▸ 문화도시, 문화적 도시재생은 지역 주민과 예술인, 문화기획자 등이 참여하여 지역문화의 창의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며, 모든 문화적 계획에 필수사항인 지역의 문화전문 인력을 지역사회에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금까지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문화 보전에 대한 지역축제 지원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축제 간 차별성 부족과 과도한 상업화, 축제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부정적 편견으로 지역축제의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고유성을 상실하고 전시성 이벤트 행사가 급증했으며, 과시성 행사로 축제가 남발되면서 예산집행에서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형태가 아닌 관 주도나 행정편의적 방식으로 축제가 기획·조직됨에 따라 오히려 지역축제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추진과제 01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지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조성사업 본격 추진

▸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

▸ 장기적으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 아래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살리는 문화도시 지정 확산

▸ '19~'30년까지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50여 개 문화도시 지정(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대상)

- 문화적 장소, 문화콘텐츠, 문화전문인력 통합 지원으로 도시문화 활성화 지원
- 지자체–시민–전문가 협의체로 지역중심 · 시민주도형 추진체계 구축, 문화도시 간 협력체계 활성화

추진과제 02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사업 확산

- 지역의 문화 · 역사, 도시문제,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유휴 다중이용 공간의 문화적 활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 도시재생 등 주요 정책과 계획 추진 시 사전에 문화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제도화 추진
- 농 · 산 · 어촌의 문화적 재생(가칭 '문화농사 사업')으로 문화예술인 · 문화청년의 귀촌 등 활력이 넘치는 지역 조성 추진

추진과제 03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특화 콘텐츠 육성

- 지역 내에 콘텐츠 기업 육성 거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양성 및 창업 활성화 · 기업 육성 지원
  ※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18년 10개), 지역거점형 기업육성센터('18년 4개 예정)를 장기적으로 주요 광역 · 기초 지자체로 확산
-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콘텐츠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 콘텐츠펀드'를 신설하고 지역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활성화
- 지역의 문화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 특화콘텐츠 육성 지원
  ※ 지역의 핵심 스토리를 발굴하고 스토리 · 문화자원 등과 결합한 지역별 핵심 콘텐츠를 개발

추진과제 04 콘텐츠산업에서 협치에 필요한 중앙과 지역, 지역 간, 지역 내 협력 체계 구축

- 정부–지방정부–중앙공공기관–지역진흥원이 참여하는 지역콘텐츠 정책협의체 구성 · 운영
- 지역이 주도하여 과제를 기획 ·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지원
- 지역 콘텐츠 거점화 · 광역화로 규모화를 도모하고 연관 산업 간 연계 및 지역 간 협업 유도

추진과제 05 지역축제 지원체계 개선

- 축제를 평가해 등급별로 서열화하고 차등 지원하는 방식에서 컨설팅을 실시해 지역맞춤형 축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
- 축제 지원 및 평가 전담기관 지정
  – 축제 정보 플랫폼 구축 · 운영
  – 글로벌 축제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 · 컨설팅
  – 축제 전문인력 보수 교육 지원 · 협력
  – 축제 빅데이터 구축, 시민축제 평가단 운영

추진과제 06 지역 전통문화 연구와 활용 활성화

-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발굴 · 연구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개발
- 지역별 전통문화 교재 개발, 학교와 연계한 전통문화교육 강화
- 지역의 특수성을 전제로 권역별(역사권) 통합정책 추진

추진과제 07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학 육성

- 마을을 재발견하기 위한 연구 · 조사 사업 확대
- 지역문화의 기초 단위인 마을문화 연구인력 양성 사업 지원

추진과제 08 책으로 소통하는 생활(마을)공동체 구현

- 책마을, 책문화센터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기반 마련
  – 지역서점 · 도서관, 지역 출판계 등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지역 고가을 활용한 출판창업, 저자 창작, 문화확동, 도서모임 등 지원

03 지역문화 거점기관 운영 혁신과 지원체계 마련

개념

- 지역문화 거점기관이란 생활지역 또는 기초 · 광역 행정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기반시설과 중간지원 기관들을 말함
- 문화기반시설에는 「도서관법」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 · 미술관, 문예회관(종전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지방문화원이 있음

추진 배경

- 자치분권시대에 걸맞게 문화 현장과 활발히 소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 지원기관, 시설, 공간 등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하고 운영체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 거점기관이 주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역할에 머문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됨
  - 지역문화의 거점기관으로서 지역문화재단 설립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문화재단이 인사, 조직, 사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자율성을 침해받음.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지역문화 현장과 갈등 해결로 지역문화생태계를 선순환하게 하고 지역문화 현장의 역동성을 높이도록 지역문화기관 운영과 지원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문화정책의 원칙인 '팔길이법칙'이 기초/광역 행정단위부터 이루어져야 지역의 문화역과–※무슨 말인지 확인 필요 사업의 혁신이 가능함. 지역거점기관들은 지역 주민들의 욕구와 문화계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지역 주민과 문화현장의 욕구와 요구를 정책으로 수렴 · 수용할 때 지역문화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사회자본이 축적되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작동함

추진과제 01 생활권에 기반한 커뮤니티형 문화공간 확대

- 대규모 문화시설과 공간의 건립 · 운영을 지양하고 유휴 공간, 기존 문화 · 체육 · 복지시설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문화공간 확보
- 문화공간 간 협력체계 구축과 협력사업 지원

추진과제 02 문화기반시설 운영 혁신

-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주체(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 시민문화활동 지원 확대와 공간(공연장, 연습실 등) 개방
  - 아동, 청소년, 시민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생활문화 동아리 등에 공간 개방
-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간 협력사업 확대

추진과제 03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투명성 · 전문성 · 독립성 · 자율성 강화

-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 지역문화재단 이사회 구성의 민주성 제고와 투명한 운영(지자체 협력)
- 현장 소통 강화와 협치로 민관 매개 기관으로서 역할 정립
- 지역의 문화기관/기구/단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민간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추진과제 04 지역문화재단 총액예산지원 제도화 추진

▸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해마다 일정 비율 출연을 의무화하는 지역문화재단 총액예산지원 제도화 추진

추진과제 05 문화기관의 특성을 인정하는 출자 · 출연기관 운영 개선

▸ 문화기관의 특성을 인정하는 출자 · 출연기관 운영과 평가 개선

04 문화 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개념

▸ 협치는 사전 협의와 공감대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공적 결정 과정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의사결정을 위한 기획 단계부터 평가, 환류까지 모든 단계에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함

▸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 평가', '문화 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지역문화실태조사',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현재 2기를 운영 중임

추진 배경

▸ 협치는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여 협치를 위한 조직, 협치를 위한 지원조직 등을 상설로 운영하고, 행정 각 부서에 협치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함. 협치는 관과 민의 속성을 동시에 이해하는 전문가를 매개로 긴 갈등 조정 시간을 견디며 상시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임

▸ 지역문화예술인, 지역문화활동가, 문화예술단체 등의 의견이 아래부터 상향식으로 수렴될 수 있어야 함

▸ 예산과 사업 결정권을 쥐고 있는 관이 주도하는 협치는 민이 들러리에 그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새로운 협치가 필요함

– 협치가 일회성 자문위원회, 토론회, 공청회 등으로 형식화되거나 관료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치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민의 불신이 높음

▸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해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 · 운영토록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설치 후에 제대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을 거쳐 2기가 운영되고 있음.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광역과 기초까지 확대하여 문화분권의 주요 기구로 작동하게 할 필요가 있음

추진과제 01 중앙, 광역, 기초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 숙의를 거쳐 각 지역의 문화진흥을 도모하는 지역 공공 기구로서 중앙, 광역, 기초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한 심의 기능을 확대 · 강화

▸ 성별, 세대별, 연령별 균형 있는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주민, 문화예술인, 사회적 약자, 문화 관련 기관과 단체 관계자, 지역문화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

▸ 필요시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정책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해 설치 근거 마련

추진과제 02 지역문화, 예술분야 협력체계 구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기구, 광역 · 기초문화재단,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

05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개념

▸ 관광생태계는 '모두를 위한 관광', '접근가능한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하여 공급자, 기획자, 소비자가 먹이사슬처럼 연결되어 상호 선순환하는 체계를 말함

▸ 공정관광

– 관광객, 지역 주민, 관광 사업체와 자연환경 간의 관계에서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 여행자의 소비가 직접 지역사회로 갈 수 있게 지역사회에 기반한 여행 프로그램

– 윤리적 여행, 지속가능한 여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책임관광, 생태관광 등 다양한 형태

▸ 모든 사람을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

– 신체적 특성이나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해 가능한 한 많은 사용자 특히 노약자,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

추진 배경

▸ 관광 분야에서 지역 분권을 이루려면 관광객의 지방 분산이 필수적인데 관광총량이 급격히 증가했는데도 방한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80% 이상은 서울이나 제주에 편중되어 있음. 외국인 관광객의 관점에서 수도권 이외 지방의 교통 · 숙박 · 안내 · 음식 · 쇼핑 등 관광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태임

▸ 관광객이 과도하게 몰리는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객의 소음, 쓰레기, 사생활 침해 등 부정적 효과로 이른바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이 발생하여 관광객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반관광(Anti-tourism)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관광산업의 발전 속도와 최근의 관광 트렌드를 고려할 때 관광객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는 대상으로서 서로 상황을 고려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단체관광에서 자유여행(FIT)로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고려할 때 외국인 관광객까지 고려한 지역의 교통 · 숙박 · 안내 · 음식 · 쇼핑 등 관광 수용 태세를 개선하는 것은 지역이 지닌 매력적인 관광콘텐츠가 실제 관광수요로 연결되도록 해서 관광객 분산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또 관광으로 인한 편익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지역관광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의 관광 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지역이 지역 주민을 위한 일상공간이자 관광객을 위한 관광공간으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모두를 위한 관광에서 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일반적인 취약계층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층, 청소년층,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정 등을 포함함. 관광 복지 차원을 넘어서 관광 참여의 총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확산이 필요함

추진과제 01 지역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관광생태계 조성

▸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각 지역의 전통 · 문화 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최적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다른 문화권에 전달할 가이드북 제작 · 보급

▸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정 국가의 문화적 성향을 사전 점검단을 활용해 진단하고, 이 지점에 대한 사전지식을 충분히 전달하고 방문선택권 보장

추진과제 02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국형 공정관광모형' 개발

▸ 해외사례 · 국내현황 · 지역관광의 문제점을 분석해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관광을 이루기 위한 '한국형 공정관광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기반해 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추진과제 03 지역의 외국인 관광 수용태세 개선

▸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보유한 지역이라도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접근성 향상, 서비스 인력 양성 등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

※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한 관광콘텐츠는 특수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관광 인프라는 글로벌 기준에 맞도록 보편성을 향상해야 함

추진과제 04 비수기를 활성화하는 관광정책 확대

▸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근로자 법정휴가 보장, 휴가분산제로 비수기와 평일 여행 확대

▸ 고령자와 청소년을 위한 비수기 여행 할인제도와 여행지원 바우처의 확대로 지역 비수기 관광 확대

추진과제 05 모든 사람의 접근가능성을 높이도록 시설과 환경 개선

▸ 길 위에서부터 플랫폼(승강장)까지 아무런 도움 없이 접근가능한 환경 조성

▸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여행 정보 플랫폼 구축

– 장애인 숙박자들과 숙박공간을 이어주는 스타트업 '어코머블'(Accomable) 같은 플랫폼 구축 지원

추진과제 06 관광편익을 지역으로 환원하기 위한 편익확산제도와 정책 개발

▸ 공정관광의 개념에 기반해 관광 분야에서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삶을 실제로 향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관광개발과 정책의 성과는 관광으로 발생하는 편익이 얼마나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돌아가느냐로 평가

▸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로 발생한 편익이 지역 주민보다 외지인과 대기업으로 편중되는 불합리한 구조에서 벗어나 교통 · 문화 · 정보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편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편익확산 정책 개발

추진과제 07 도시의 다양한 정체성을 살린 관광 매력도시 육성

▸ 관광 잠재력이 있는 도시를 선정해 서울 · 제주를 대체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매력도와 관광 인프라를 갖춘 '관광매력 거점도시'로 육성

※ 주요 교통거점(공항, KTX역 인근), 광역개발 중심지 등 권역별 핵심도시 선정(도시 브랜드에 부합하는 관광체계 구축→관광매력도 제고→국내외 관광객 유입)

▸ '관광매력 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법 제정 추진

※ 도시정체성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설계, 도시브랜드 위원회 설치, 관광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조성 등

추진과제 08 지역관광 역량과 기반 강화

▸ 지역관광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주도형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관광개발 평가와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사업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 다양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안내체계 개선과 서비스 품질 개선

▸ 지역관광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통 연계망 구축,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

▸ 지역 주민 사업체 창업 활성화 지원

– 지역 '관광두레' 창업 · 운영 활성화로 지역 주민 주도형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18년 300개 → '30년

2,000개/누적)

※ 숙박 · 식음 · 체험 등의 분야에서 '관광사업체'를 운영하도록 창업과 경영개선 지원

추진과제 09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역관광 육성

– 매력적인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숨은 관광지 발굴 · 개방, 테마별 관광콘텐츠 발굴, 세계적 문화관광축제 육성, 농 · 산 · 어촌 관광 활성화

▸ 문화적 지역재생으로 도심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추진과제 10 지역주도형 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형 DMO* 설립 지원

* 지역마케팅조직(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 특정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연계된 조직을 활용해 민 · 관 · 산 · 학 공동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사업(상품개발, 홍보 등) 추진

※ 역할 예시: 지역 간 조직은 조정 · 관리 · 정보 제공으로 지역관광사업 지속 관리, 지역 내 조직은 지역주도형 관광사업 추진

※ 사업 예시: 지역 데이터 수집 · 분석 · 제공, 주요 업적 평가지표 설정, 지역 관광상품 개발 등 사업 추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공동 홍보 등

06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개념

▸ 생활체육은 국민 모두가 건강을 유지하거나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모든 체육활동을 말함

–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활권역 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고양하고 풀뿌리 스포츠클럽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활력 있는 여가활동과 지역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해짐

추진 배경

▸ 100세 시대에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인권으로서 스포츠(행복추구권, 건강권, 문화권) 정책이 필요하며, 보편적 복지로서 누구나 어디서든 즐기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통합 대한체육회 이후 사업 우선순위는 여전히 엘리트 체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학교체육 · 생활체육 · 전문체육 간 연계 부족. 각 분야의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클럽 시스템으로 연결하고 수요자 맞춤형 체육시설, 정보, 지도자 접근성 등이 필요함

▸ 2016년 말 기준 주 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 인구 비율은 59.5%로 2012년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시설 인프라 부족. 산재한 생활체육 정보를 일괄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함

▸ 체육지도자의 질 높은 서비스는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선행조건인데도 체육지도자 선발, 배치, 처우, 전문성 등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음

▸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스포츠에 대한 욕구 조사에 기반한 정책 수립 필요함

– 동기 결핍의 문제, 교통, 비용, 시설 접근성 문제

– 원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조사

▸ 대부분 생활체육정책이 비장애인 위주로 설계되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17년 기준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20.1%)이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이를 고려한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의 재설계가 요구됨

▸ 개개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하고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공정, 도전, 혁신, 평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며, 공공 스포츠클럽 등 체육활동으로 계층, 성별,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해지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공동체 의식이 증진됨

▸ 생활체육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스포츠 생태계 선순환이 가능해짐

추진과제 01 인권으로서 스포츠(행복추구권, 건강권, 문화권) 정책 추구

▸ 보편적 복지 차원의 스포츠 복지 추진

▸ 생애주기별 체육 프로그램으로 평생체육 체계 구축

– 3세부터 100세까지 체육으로 건강하게 살기

– 평생 즐기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과 지도자 제공

▸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맞춤형 생활체육 기반 조성

– 시군구 단위로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장애인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와 역량 강화 등

추진과제 02 지역 공동체를 확산하기 위한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함께하는 스포츠, 복원하는 지역공동체(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적 약자와 함께)

▸ 1인–1읍 · 면 · 동–1생활체육 클럽 운동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지역공동체 복원

– 2030년까지 3,503개 공익 스포츠클럽 구성

▸ 모든 시민이 즐기는 '시민리그제' 전국적으로 확대(서울의 'S리그제' 참고)

▸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클럽 지원과 활성화 근거 마련

▸ 종목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와 지역 스포츠클럽 리그의 통합 운영 추진

※ 농구 예시(안): 대한농구협회가 학교스포츠 농구클럽, 지역스포츠클럽 농구팀이 모두 참여하는 리그 기획, 시도 농구협회는 리그운영 · 시설 지원

▸ 지역 체육인과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스포츠클럽 운영 장려

※ 스포츠클럽 공모 참가자격 확대와 우대(가점 부여) 등 사회적 협동조합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종합 지원체계 구축 검토

▸ 지역 중심의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대회 운영(심판, 시설, 운영요원 등) 지원 확대

※ 스포츠클럽과 문화 · 예술 동아리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청소년 축제로 개발

추진과제 03 언제 어디서나 즐기는 스포츠 환경 조성

▸ 일상에서 편리하게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 집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 공공체육시설 멤버십 제도로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을 함께 이용 가능

▸ 은퇴 선수들을 활용하여 필요한 지역에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스포츠클럽 체계 중심으로 전문 선수 육성체계 고도화

추진과제 04 협치를 위한 스포츠클럽과 지자체 지역체육단체의 역할 정립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스포츠 시설 배분, 예산 지원 등 지역체육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시군구체육회는 스포츠클럽 운영 또는 운영 지원(지도자 파견 등). 지역종목단체는 대회의 조직 · 운영, 우수선수 발굴 · 육성 등

▸ 비영리법인이 아닌 지역체육단체※도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 현재는 비영리법인에 한해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을 허용하나 지역체육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있으므로 공익성, 투명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

▸ 우수 인력지원(인건비 직접 지원, 교육 · 연수 등 간접 지원), 재정 자립 등 지역체육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발제 2

한광연 사업방향 및 조직강화 방안

박경동 |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팀장

2019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정책워크숍

한광연 사업방향 및 조직강화방안

2019. 1.25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팀장 박경동

01 들어가며

- 한광연 사업방향 및 조직강화 방안의 전제조건
  -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는 목적에서 제안된 것이기에 이론적 논의보다는 그 동안 논의된 텍스트를 중심으로 과제도출
  - 한광연 설립취지문, 이사회 및 총회자료, 한광연 관련 세미나와 포럼 등의 기초자료 활용
  - 사업방향과 조직 강화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어떤 목적에서 설립되었고,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함

02 한광연 사업방향 설정을 위한 기존자료 검토

한광연 설립 과정의 초기 문제의식

- 현재의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의 전신격인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를 결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각 시도문화재단만의 역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 각 문화재단이 지방정부와 협의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은 각 지역문화재단이 각자 해결한다고 해도 중앙정부를 상대해야 할 사안들은 각 개별 지역 문화재단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2012년에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를 결성해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가능하게 했다. (남송우, 2017, 한광연 정책포럼 자료집 8쪽)
- 즉 중앙정부를 상대해야 할 사안들은 각 개별 지역 문화재단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고 중앙정부와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를 결성함.

한광연 설립취지문에 제시된 한광연의 역할

-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서로 연대하고 소통하며 협력, 실행하는 것에 그 목적...지역문화진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정부의 충실한 파트너로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21세기 인류가 추구해야 할 문화의 방향인 문화다양성과 문화민주화를 실현하고, 결국 국민의 문화예술적 삶의 질을 한층 드높이는 길이 될 것...지역의 새로운 문화 활력 창출과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
- 설립취지문에는 한광연의 역할을 정부의 충실한 파트너로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 문화다양성과 문화민주화를 실현하고 국민의 문화 예술적 삶의 질 고양, 지역의 새로운 문화 활력 창출과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여 확대 등으로 제시함. 설립취지문의 특성상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03 한광연 역할과 과제 기존자료 검토

한광연 창립총회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된 한광연의 역할과 과제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가 <해야 할 일>	
핵심고객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에 기대하는 역할**
지역문화생태계 주체들	• 각 지역의 문화생태계로의 보다 많은 활력 유입 • 지역문화 주체들의 활동 영역의 확장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보다 나은 제도 개발 및 이를 위한 협력 플랫폼 역할
중앙정부 정책주체들	• 지역문화를 진흥하는 역량있는 주체(Subject) 역할 • 국가 문화정책전달체계 상의 효율적인 주체(Agency) 역할 • 문화정책거버넌스를 위한 협력 주체(Representative) 역할
광역문화재단 및 직원	• 지역문화진흥 시책 수행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 문화재단이라는 제도의 지속 가능 기반 조성 • 문화재단들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창구

2016,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가 해야 할 일과 잘 할 수 있는 일"(서울문화재단 김해보)

03 한광연 역할과 과제 기존자료 검토

한광연 창립총회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된 역할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가 <더 잘 할 수 있는 일>	
연합회의 특성과 장점	**연합회로서 특성과 장점을 활용하는 사업**
지역별 문화자원과 인력 풀(pool)들의 연합	• **확장된 다양성을 활용하는 사업** (지역문화주체 역량강화, 창작공간페스티벌 등)
	•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사업** (공동 기금모금 캠페인, 지역문화 통계조사 등)
전국단위 네트워크의 단일 접점과 넓은 연결망	• **전달의 효율성을 활용하는 시책** (대정부 문화정책 제안, 정책협력 거버넌스 참여 등)
	• **높은 파급 및 확산성을 활용하는 사업** (문화부 시책사업 수탁 시행, 기업문화제휴사업 등)

2016,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가 해야 할 일과 잘 할 수 있는 일"(서울문화재단 김해보)

04 한광연 비전-미션-전략과제 검토

비전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의 핵심주체 및 플랫폼

미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연대,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협력

전략과제

지역문화정책 개발 및 제안	• 지역문화 실태 파악을 위한 각종 통계조사(지역문화지표 조사) • 문화정책 컨퍼런스 개최 및 발간사업 • 정기적으로 대정부 문화정책 제안 •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에 참여(지역문화협력위원회 등)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씨너지 창출	• 지역 간 교류를 통한 창작지원(전국 창작공간 페스티벌 등) • 생활문화활성화 협력사업(생활문화예술 통합 페스티벌 등) • 국제교류 및 지역문화 네트워크 확산 사업 • 지역문화 재원조성 공동캠페인
지역문화주체들의 역량 강화	• 연합회 정기회의 및 워크숍 개최 • 지역문화재단 직원 역량강화 및 교류 워크숍 • 지역문화전문인력 교류 및 양성 • 지역문화재단의 지속가능 경영기반 구축사업(문화재단 성과지표개발 등)

운영원리 → 추진 전략

- 호혜와 협력 → 지역 이기주의와 단순 균형배분 논리 극복
- 창조적 상상 → 지역과 지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제휴 협력
- 열린 거버넌스 → 지역문화생태계의 네트워크 플랫폼 역할
- 정책적 자주성 → 자체 자원을 활용한 공동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04 한광연 비전-전략과제 검토

● 한광연 설립목적- 비전-전략체계 및 공동사업의 원칙

- 지역문화정책 집행의 핵심기관인 광역문화재단들의 연합체로서 <해야 할 일>과, 함께 모였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는 일>등을 구분하는 등 한광연 설립 당시 문제의식과 역할들이 비전, 운영원리, 전략과제에 함축적으로 녹아있음
- 한광연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단기간에 달성될 수 없기에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됨

● 한광연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추진사업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음

05 한광연 미션달성을 위한 노력들

● 한광연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

- 법인허가 : '17. 1. 16 (문체부장관)
- 창립총회 및 정기 이사회 : '16년 5월 22일 제주/ 회장: 심재찬 부회장 : 김경식(충북) 박경훈(제주)
- 제 1차 임시이사회 : '16년 9월 8일 서울
- 제 2차 임시이사회 : '16년 11월 8일 청주
- '16년 하반기 총회 : '16년 12월 22일 대전/ 회장 : 김경식 부회장 : 박경훈(제주) 이병천(전북)
- '17년 상반기 정기총회 : '17년 3월 23일 청주/ 정관변경 (주소지 변경)등
- '17년 정책토론회 개최 : '17년 4월 28일 서울/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정책
- '17년 정책포럼 개최 : '17년 5월 11일 제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정책
- '17년 1차 임시총회·이사회 개최 : '17년 5월 12일 제주
- '17년 재단활동가교육 流&美 개최 : '17년 6월 25일~27일 강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간담회 : '17년 9월 4일 문체부 장관 접견실(세종)
- '17년 정책포럼 개최 : '17년 10월 16일 전북
- '17년 제2차 임시총회(이사회) 개최 : '17년 10월 16일 전북 전주
- '17년 제3차 임시총회(이사회) 개최 : '17년 12월 19일 경남 통영
- '18년 1월 한광연 정책포럼 개최 : '18년 1월 31일 세종
- '18년 2월 한광연 정기총회 및 이사회 : '18년 2월21일 강원
- '18년 4월 한광연 정책워크숍개최 : '18년 4월 26일 제주/ 문화분권시대 광역문화재단 톺아보기
- '18년 4월 한광연 임시총회 이사회 : '18년 4월 27일 제주
- '18년 12월 한광연컨퍼런스 : 청주/ 함께 걷는 길 생생공감
- '18년 12월 한광연 임시총회(이사회) 개최 : '18년 12월 20일 세종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간담회 : '19년 1월 11일 (서울)

06 2018 한광연 전략과제 수행사례

● 2018 한광연 전략과제 수행사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전략과제 수행 사례			
전략과제	시책사업 사례	개요 (시행내역 및 추진방안)	추진결과
1)지역문화정책 개발 및 제안	1-1)지역문화 지표조사	- 전국공통 지역문화지표 체계 개발 - 지역별 문화지표 조사 및 공유 : 2015년 서울, 2016년 광주, 제주 등 조사결과 종합하여 지역문화생태계 현황 비교 정책세미나 개최	
	1-2)문화도시재생 (문화도시+도시재생)	-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은 물론 문화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포괄하는 지역재생 추진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 '문화+지역(도시)+재생' 관련 지역특성을 살린 우수사례 공유회 개최	
	1-3)문화정책 세미나 개최	- 주요 의제 설정하여 연합회 주최, 회원기관 주관 방식으로 정책세미나 개최 : 정기회의 연계 연 최소 1회 개최 - 문화정책 관련 학회와 공동개최 하여 현장과 이론 간의 가교 역할 수행 : 국내외 주요(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일본문화정책학회 등) 학회 및 문화예술기관들과 공동 컨퍼런스 개최	●
	1-4)대 정부 문화정책 제안 및 지역문화정책 협의체 운영	- 지역별 정책토론회 개최 및 지역문화 현장 여론을 종합하여 대정부 정책 제안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포괄적 보조금형 재원 분배, 추가 재원 확보 등 그동안 한광연의 정책제안 실행을 위한 여론조성 및 실무 협의 - 학교예술강사 사업 등 한광연 관련 현안별 입장 발표 및 개선방안 제안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에 한광연 대표자 참여 - 문체부와 지역문화협력 협의체 상시 운영	●

06 2018 한광연 전략과제 수행사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전략과제 수행 사례			
전략과제	시책사업 사례	개요 (시행내역 및 추진방안)	추진결과
2)지역 간 협력을 통한 씨너지 창출	2-1)창작공간 통합페스티벌	- 전국 문화재단 소속 창작공간 작가들의 지역을 넘은 상호교류 및 발표 - 2016. 9월 제2회 행사 개최(서울문화재단 주관)	
	2-2)생활문화 활성화 협력사업	- 지역별 생활문화 관련 사업을 전국적으로 연계개최 (ex아마추어합창경연대회(대전문화재단 주관))	
	2-3)문화정책 국제교류	- 문화재단들의 해외 교류의 매개 역할 담당 : 부산문화재단 조선통신사 연계 한·일문화 예술교류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창의도시 정책포럼 등	
	2-4)지역문화 재원조성 공동캠페인	- 문화기부 및 제휴 활성화를 위한 공동 캠페인 시행 - 정부차원의 새로운 지역문화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및 시범 운영	

06 2018 한광연 전략과제 수행사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전략과제 수행 사례			
전략과제	시책사업 사례	개요 (시행내역 및 추진방안)	추진결과
3)지역문화 주체들의 역량 강화	3-1)공감워크숍流&美	- 2014년부터 매년 춘천 일대에서 개최 (강원문화재단 주관) 직급별/업무별 재단직원교육프로그램운영(ex평소접점이부족한인사부서담당자교육프로그램운영) - 직급별 2박3일 숙박연수 총 3회 개최(2018)	●
	3-2)총회 및 정책포럼	- 2013년부터 매년 5월 제주도 일원에서 총회와 정책포럼 병행 (제주문화예술재단 및 한광연 공동주관) - 당해연도 정책의제에 대한 포럼 통해 광역문화재단 임직원 역량강화 및 교류	●
	3-3)지역문화전문인력역량강화 프로그램	- 문화다양성매개자양성연수(인천문화재단주관) :예술강사, 지역아동센터교사등대상으로문화다양성감수성을갖춘지역문화매개자양성을목적으로한장/단기 워크숍및포럼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공동커리큘럼연구개발	
	3-4)문화행정 혁신 컨설팅	- 문화재단 경영성과지표 공동 개발 : 계량적 성과주의 평가를 대체할 평가 체계 및 지표 제안 - 문화행정 혁신 방안 공동 제안 : 담당자들 간의 워크숍을 통해 보조금 관리 지침 개정, 공정한 예술노동 가치 보전 등 문화행정의 적폐 해소를 위한 혁신방안 제안 - 평가, 경영 컨설팅 등을 위한 문화정책 전문가 풀 운영 : 한광연 회원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문가 DB 공유체계 구축, 한광연 출신의 현장경력 전문가들의 활동 강화. 지역문화예술단체 운영컨설팅	●

10

08 2019 한광연 사업방향

● 2019 한광연 사업방향

주요사업 내용	쟁점 및 이슈	고도화 방향
▪ 총회, 이사회 운영 ▪ 홈페이지 운영 ▪ 운영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 공동사업	▪ 총회, 이사회 공동 개최 문제 회의록 등 의사결정 결과공유 ▪ 홈페이지 정비 및 활성화 ▪ 위원회 정비 및 실효성 확대 ▪ 공동사업 방향설정	▪ 정관 및 규정 개정 이사회, 총회 회의록 체계적 정리 의사결정 결과 공유 작업 ▪ 홈페이지 정비 및 자료업로드 회원재단 업무보고 및 규정 공유 ▪ 사전 의제 안내 및 사후 결과정리 운영위원회 지역순회 개최 ▪ 정책포럼, 직원워크숍, 총회 등의 공동사업 지속하되 정책위를 통해 추가사업 확정

12

07 성과와 반성

● 성과와 반성

- 한광연 설립, 조직구성, 정관 규정정비, 비전과 전략수립, 총회 및 이사회, 각종 포럼과 컨퍼런스 개최, 직원역량 강화워크숍, 대정부 정책제안 등
- 설립 3년 만에 설립취지 구현은 물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왔음
- 특히 조직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문화정책 컨퍼런스 개최, 문체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대정부에 정책을 제안한 점, 재단 직원의 역량강화 교류 워크숍 등을 추진 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임
- 다만 다양한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출범초기 조직이 갖는 한계들이 노출되기도 했음
- 정관-규정 등이 미비하여 운영의 혼란을 겪기도 했고, 예산구조의 취약점으로 인해 사무국이 회장재단으로 이전되었고, 대정부 정책제안과 협력 사업이 안착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지 못함
- 그 동안의 추진사업의 성과를 계승하되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운영시스템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11

10 공동사업

● 공감워크숍 流&美 사업

목적 : 한광연 회원기관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강화, 회원기관 직원 간 교류의 장 마련
예산 : 15백만원
방법 : 직급별 2박3일 숙박연수
내용 : 특강, 문화현장 체험 및 관람, 교류워크숍 등

● 정책포럼

목적 : 정부 정책 기조와 흐름을 공유하고, 향후 지역 정책 수립에 반영
예산 : 15백만원
주제, 내용, 시기, 추진방법은 정책소위에서 논의

13

10 공동사업

●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목적 : 한광연 현안 심의 의결 및 논의
예산 : 10백만원(정기총회 1회, 임시총회 2회)
방법 : 의장기관 주관, 지역순회
현안 : 장소(광주), 총회시기 및 안건 논의 필요

● 예술인복지창구 개설

목적 :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창구 개설 필요
예산 : 10백만원
주제, 내용, 시기, 추진방법은 정책소위에서 논의

14

11 조직강화 방안

●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① 운영위원 월례회의 정례화, 안건 사전 회람, 회의 결과 및 추진상황에 대한 공유
② 정책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의 정례화 등 고도화 방안 마련
③ 경영파트 상설네트워크 필요
④ 대표현황, 조직 및 예산, 주요업무, 규정 등 한광연 차원의 조직관리 지표 신설 취합, 관리, 공유
⑤ 총회, 컨퍼런스 기간에 각 재단 성과물(보고서, 간행물) 공유

● 사무처 정비

① 정관과 규정 정비 : 총회-이사회 통합, 사무처장 임기, 예산집행 등
② 상설 사무처 운영 기반 마련 : 회비 인상을 통한 재원 확보 등
③ 연말 임시총회 시 차기년도 사업 및 예산안 심의 필요. 현재 정기총회에 승인하는 구조
④ 사무처 문서양식 표준화(회의록, 지출양식 등) 및 온라인 문서관리 방안 마련

15

발제 3

지역문화정책 담론의 생산과 소통을 위한 _ 숫자, 의미, 공감 / DATA의 間知

김해보 | 서울문화재단 혁신감사실장
김창영 | 케이스탯리서치 상무

지역문화정책 담론의 생산과 소통을 위한

_ 숫자, 의미, 공감

(한광연 워크숍 : 2019.1.25, 광주문화재단)

김 해 보
(서울문화재단 혁신감사실장)

현장 목소리가 정책, 제도화가 되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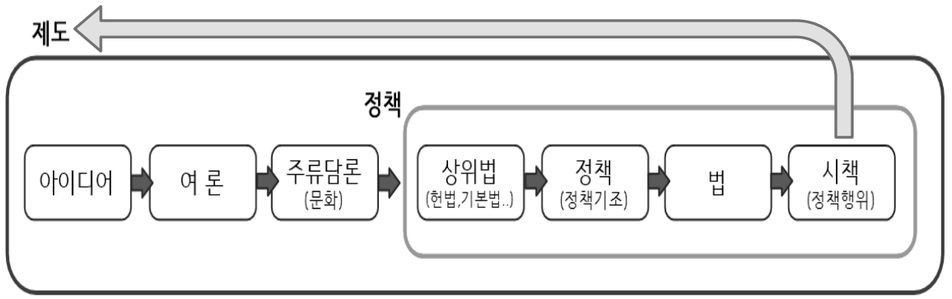

고민해야 할 지점들

현 장	목소리	채 널	정책주체
[누구의]	[어 떤]	[어떻게]	[누구에게]
시민들 고객들 ☞서비스대상 vs. 국민	집단의 이익 현장의 고충 제도 동의 또는 반대 정책 또는 예산 요구 ☞행정-민원vs.정치-여론	강하게(세게/넓게)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의미가 이해되게 가치가 공감되게 ☞특수성 vs. 보편성	국회 청와대 ☞정치vs.행정
예술창작자 문화기획자 ☞당사자 vs. 대표성	부정부패 신고 행정제도 개선요구 ☞감사 vs. 혁신	성명 언론보도 웹 콘텐츠 연구보고서 ☞타당성 vs. 절박성	문화부 기재부/행안부 ☞의제vs.자원vs.절차
문화담당 공무원 문화기관 문화재단 ☞광역 vs. 기초 주체	사회변화 필요성 공감 선지적 제안 ☞여론 vs. 담론	네트워크/포럼/세미나 협의체/자문회의 법에 정한 제도 ☞실질변화vs.법적권위	지자체 협의체 문화재단 ☞감독자vs.파트너
전문가 ☞예술vs.문화vs.사회			국민 문화예술계 ☞정책 대상vs.주체

입 법 (법률 제.개정)

신규정책 (시책사업, 예산할당)

제도개선 (e-나라도움 개선 등)

사업기획 (파일롯트사업, 연구)

변화준비 (학습, 사회적자본형성)

변화요구 (여론, 청원)

지역문화정책 담론의 생산과 소통

어떻게 #1. 숫자 만들기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객관성을 높여주는

정책근거로 인용하기 쉬운

숫자 !

사 례 _ 못 믿을 숫자 ?

中 GDP 산정방식 바꾼다…6%대 중속성장 달성위한 꼼수?

2분기부터 R&D·공유경제도 GDP에 포함
인도, 작년 산정방식 바꾼후 성장률 2%P↑

기사입력 2016.07.06 17:47:22 | 최종수정 2016.07.06 17:53:04

◆ In-depth Plus / 뻥튀기 논란 커지는 GDP 성장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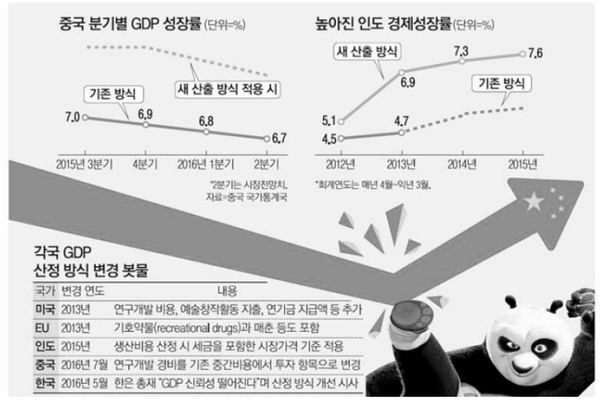

MK 뉴스 (2016.7.6.일자)

숫자의 한계 !

(1) Not guilty, Nor innocent! (숫자는 무죄지만 순진하지도 않아…)

- 통계청장이 (무슨) 죄인… : 애초부터 조사하는 정책의 답정너 또는 확증편향을 위한 조사 프레임
- 보정 또는 마사지 : 심지어 GDP도 마사지 하는 중국 지방정부… 대안이 없으니 믿거나 말거나

(2) 성실한 연구원 한 명이 세계적인 문화도시를 만든다?

- 열심히 찾으면 많이 보인다 :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와 분포특성" (2016년, 서울연구원)의 상전벽해
- 평가대상인 숫자는 매년 증가한다 : 문화셈터, 서울통계 시스템에 입력되는 행정자료의 승인통계 둔갑

(3) 아무리 Big 해도 충분히 Real 하지는 못한, 세상의 파편일 뿐…

-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 인터파크 티켓 판매 실적으로 공연예술 경기동향 파악하기
-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정책으로 : 매년 증가하는 전문예술법인 숫자는 문화관련 사업체의 호황을 의미?

(4) 그래도 숫자가 이긴다…아전인수, 호가호위, 주객전도로

- 애초 취지와 상관없는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정렬 : 지역문화지표 조사 목적, 지수화, 해석 및 활용 사이의 갭
- 정책으로만 바꿀 수 없는 사회변화를 욕망하는 성군들 : 삶의 질 최고 도시를 자랑하거나 목표로 삼는 정치인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전문화재단 2016년 상반기 정책세미나 "공공정책에 문화예술을 입히다" 자료집 참조

지역문화정책 담론의 생산과 소통

어떻게 #2. 숫자에서 의미 파악하기

숫자가 오독되지 않게

가치가 전도되지 않게

숫자가 아니라 트렌드로

현장의 감각으로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문화정책 전문가 !

사 례 _ 서울서베이 – 문화예술에 대한 여가의 의미는?

여가활동의 유형 (서울서베이, 서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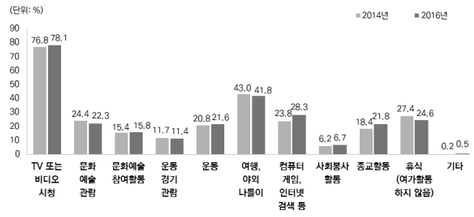

여가활동의 유형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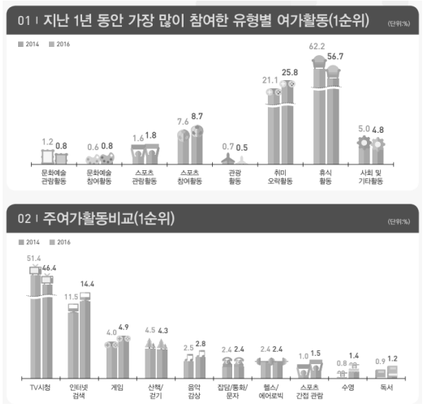

여가시간이 늘 수록 문화예술참여는 줄어들 것이다??
(서울시민문화향수실태조사, 서울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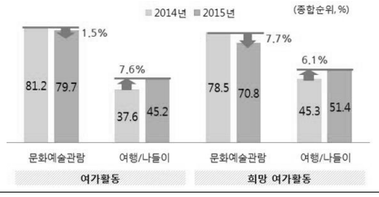

☞미래를 예측한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전체의 평균 보다 고관여자의 흐름이 중요할 수도 있어 !

사 례 _ 서울서베이 – 인터넷과 TV는 문화예술의 적인가?

공공도서관 대출 권수(서울서베이, 서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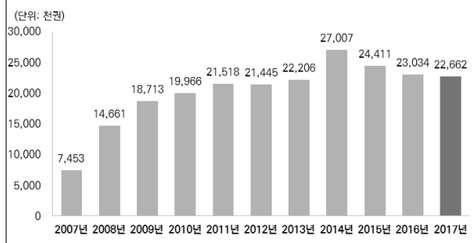

독서율 및 독서량(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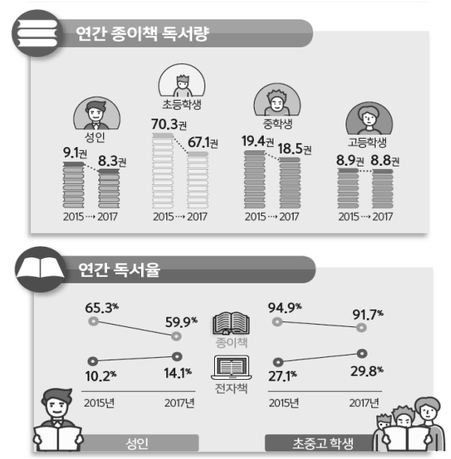

여가활동의 유형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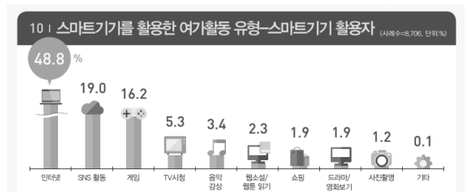

☞뉴미디어를 활용한 여가의 문화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정책 설계도 가능 !

지역문화정책 담론의 생산과 소통

어떻게 #3. 더 넓게 공감되는 정책으로 집행하기

매끈한 언어로 포장하여 강요되는 가치

이해관계자 마다 다르게 인식하는 의미

형식적이더라도 중요한 행정혁신의 실적

현장과 소통하는 거버넌스 체제와 사회적 자본 위에서 공감하며 함께하는 변화

사례 _ 서울시민문화생활리포트 – 시민들에게 문화는?

무엇이 문화일까? 357)

☞행정가들이 생각하지 못했거나 형식적으로만 생각했던, 시민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의 문화라는 말의 의미 !

- 베이비부머 윤00님에게는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미안함**
  - 가족들과 일 년에 한 번씩은 다 같이 뮤지컬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피곤하지만 아이들과 어린 시절을 함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그러는 것이 더 큰 것 같아요. 뮤지컬 '영웅'을 봤었는데 50대 중반의 아빠와 20대 아이들이 공감을 형성하면서 보고 함께 이야기 거리가 생기고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 3040 남성 1인가구 최00님에게는 **특별한 경험**
  - 예전에는 문화생활 하면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즐기는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페라나 사교파티 같은 거요. 어린 시절 문화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뭔가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 특별한 걸 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피곤할 때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든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 50대 1인가구 허00님에게는 **희망의 씨앗**
  - 젊을 때는 군대에서 다치고 무역 한다고 외국을 많이 다니다가 지금은 쫄딱 망해서 어렵게 살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본 피아니스트 영화에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것이지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저렇게 피아노 연주를 하는구나 싶고, 나락의 밑바닥 알코올 중독자에서 지금은 문화예술을 하면서 희망을 찾고 있어요.
  - 정말 밑바닥에서 예술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 줄 곳 없는 1인 가구가 많고, 생활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여러 번 문화생활을 하다 보니 뭔가 달라져요.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은 희망의 씨앗이라 봐야 해요.

70대 1인가구 박00님

시민들이 말한 '문화'의 의미 주요키워드 358)

유념해야 할 것 _ 중심잡기

말의 홍수

성과주의 행정 (Performance-based)	증거주의 정책 (Evidence-based)	가치공감 정치 (Appreciation-based)

숫자 폭력

행정 시스템의 합리성(rationality)	사회에 통용될 정당한 가치(reasonable value)
예산 잘라내기	가치 포함하기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문화예술의 활용적 가치	문화예술의 존재 자치

극복해야 할 것 _ 오해와 스트레스

(1) 지방자치 시대의 "거버넌스" 만능 주의

- 행정가의 스트레스 : 행정처리 불가, 성과보고 난감, 고객님도 싫다는 주인님 모시는 머슴인 듯...
- 현장의 배신감 : 답정너 정책가의 거수기, 성군 단체장의 화보용 병풍, 책임은 어디까지?

(2) 좌우의 해석이 다른 "사회적 자본"

- 관계 지향성만 강조 : 상호 신뢰, 현장과의 라포 형성이 중요 vs. 자기들 끼리만 통하는 네트워크, 부패의 온상
- 시스템을 돌아볼 때 : 사람과 사회적 가치가 우선하는, 융통성 있는 제도 vs. 공정하고 안정적 시스템이 공공 신뢰의 기반

(3) 누구도 시비 걸지 않는 매끈한 "담론"

- 탈정치화 된 콘텐츠로 소비되는 담론 : 당사자의 칼칼한 여론보다는, 토론불가 극단주의 주장 또는 유식한 학자의 설명
- 혁신성과도 중요한 공무원의 형식주의 제도 변화 : 실효성 없더라도, 모두가 행복한, 발 빠른 제도변화 실적

다시, 고민해야 할 지점들 _ 한광연의 과제

(1) 더 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스템
: 행정자료가 아닌 시민 문화향수 실태와 문화 현장조사 통계의 정기적 생산, 전국 문화통계 공유시스템 구축, 기초+광역 문화정책 협의체 구성

(2) 시달된 변화를 집행하기 보다는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준비하는 정책역량
: 정책 담론 생산과 콘텐츠화 역량 강화, 직원의 현장감각과 정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법에 근거한 대정부 협의 및 자문채널 확보, 현장 예술가 의견과 행정사례 수렴하여 행정제도 개선 대안 제시

지역문화정책 담론의 생산과 소통을 위한 숫자, 의미, 공감
- DATA의 間知 -

2019. 01. 25.

케이스탯리서치 김창영

1. 조사 설계

- 2014년의 조사대상자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회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고관여자였으며, 2015년에는 자치구 조사를 포함하면서 '자치구 문화서비스 접점구민'3)으로 확대됨
- 별도 표본추출은 없었으며, 일정기간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를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구분	2014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2015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서울문화재단 조사	자치구 조사
조사대상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회원 및 재단 사업 참여 경험자 (문화고관여자로 지칭)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회원 및 문화정책패널 참여자 (문화고관여자로 지칭)	7개 자치구 문화서비스 접점구민 (금천, 구로, 강남, 노원, 마포, 성북, 영등포)
유효표본	2,905명	1,498명	5,19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Web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Web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면접조사+온라인 조사
표본추출	재단 홈페이지 회원 및 사업참여자 리스트를 활용한 전수조사 (72,348명에 대한 이메일 발송)	재단 홈페이지 회원 및 문화정책패널 리스트를 활용한 전수조사 (72,527명에 대한 이메일 발송)	편의표본추출
조사기간	2014년 12월 2일~12월 26일	2015년 8월 24일~9월 23일	2015년 6월~11월 각 자치구별 상이
조사기관	서울문화재단(조사 및 분석 대행: (주)월드리서치)		

3 / 20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관

1. INTRA-DATA

1. 조사 설계

- 2016년의 경우 일반시민과 서울문화재단 회원은 조사 대상으로 유지함
- 신뢰할 수 있는 회원정보를 보유한 서울시통합회원/서울시립미술관 등으로 대상 확대
- 관심집단에 대한 정의를 서울시 문화행정 서비스 이용자로 정의함

구 분	2016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문화관심집단(서울시 문화행정서비스 이용자)			일반시민
	서울시통합회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문화재단	
조사대상	- 문화행사 뉴스레터 수신자	- 미술관 홈페이지 접속자 - 미술관 뉴스레터 수신자	- 재단 홈페이지 접속자 - 재단 뉴스레터 수신자	서울거주 온라인 조사 패널
유효표본	5,706명			2,000명
	3,846명	959명	901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Web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Web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Web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Web 조사 & 50대, 60세 이상 50% 면접조사 병행
표본추출	서울시 홈페이지 문화행사 뉴스레터 수신 대상자 리스트를 활용한 전수조사	시립미술관 뉴스레터 수신 대상자 리스트를 활용한 전수조사	재단 홈페이지 회원 및 문화정책패널 리스트를 활용한 전수조사	서울 거주자 중 성/연령/권역별 할당추출
표본오차	±1.3%p			±2.2%p
조사기간	2016년 11월 21일 ~ 12월 2일	2016년 11월 21일 ~ 12월 2일	2016년 11월 21일 ~ 12월 9일	2016년 11월 21일 ~ 12월 2일
조사기관	서울문화재단 (조사 및 분석 대행: (주)월드리서치)			

4 / 20

2. 접근 방향 》 세분화

- 2014년 조사에서 세대/결혼/자녀유무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문화에 대한 욕구, 참여도와 참여 방식, 문화생활의 애로사항을 종합하여 문화활동에 대한 8개의 '문화향유 특성 그룹'을 도출하였음
- 이를 활용하여 문화향유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가능함

세대	8개 문화활동 특성화 그룹
20대	- 현실에 대한 불안을 문화로 극복하는 **<문화 열광족>**
30대	- 문화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화려한 싱글녀>** - 문화 최전방에서 물러나 육아의 행복에 빠진 **<육아맘>**
40대	- 성장하는 자녀들과 집 근처에서 놀고 싶은 **<프렌디>** - 변화된 환경에서 문화향유의 새로운 방식을 찾는 **<컬처맘>** - 30대처럼 화려하지만 조금 외롭고 피곤한 **<블루 싱글녀>**
50대	- 양육의 그늘에서 벗어나 문화강좌에 열광하는 7080 **<낭만족>**
60대	- 문화만족이 삶의 만족으로 연결되는 행복한 **<액티브 시니어>**

2. 접근 방향 》 문화향유 범주 구성

- 문화향유와 관련된 항목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와 참여, 환경만족도 등으로 범주화
- 욕구가 참여에 어떻게 연결되고, 참여 수준에 따른 만족도 차이 등을 분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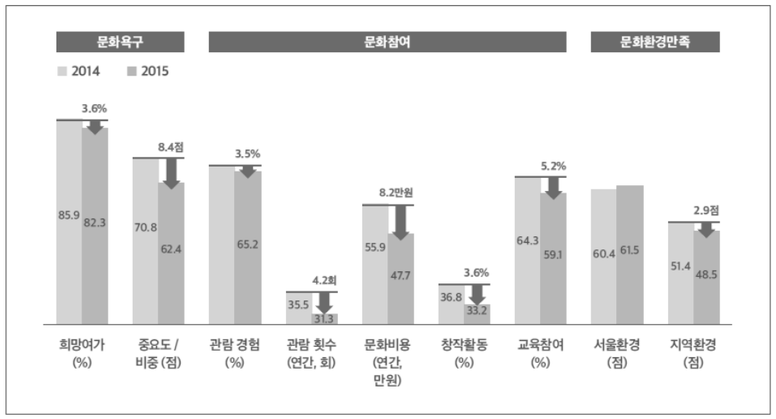

2. 접근 방향 》 영역별 연관성 분석

- 욕구와 참여, 주요 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 통해 문화욕구와 소극적인 문화 참여(관람), 문화환경 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함. 교육, 창작적 취미활동 등의 적극적 문화 참여는 상관성이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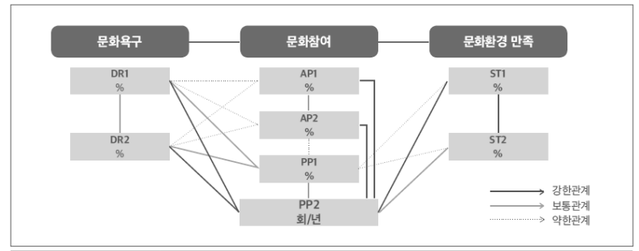

구분		코드	세부 내용
욕구(DesiRe)		DR1	A3. 희망 여가활동(②문화예술 관람, ③창작적 취미활동, 1+2 통합, %)
		DR2	D6.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의 비중(긍정응답, %)
참여(P)	적극 (Active)	AP1	A1. 주말/휴일 여가활동(③창작적 취미활동 선택 빈도) 1+2+3 통합, %
		AP2	C1. 문화예술 교육 참여율, 경험 %
	관람 (Passive)	PP1	A1. 주말 또는 여가활동(②문화예술 관람 선택 빈도) 1+2+3 통합, %
		PP2	B2. 문화활동 총 횟수(개별 활동 합계)
		PP3	B2. 문화활동 총 비용(개별 활동 합계)
만족(SaTisfaction)		ST1	E2. 서울시 전반 문화환경 만족도(긍정응답, %)
		ST2	E2. 거주지 주변 문화환경 만족도(긍정응답, %)

2. 접근 방향 》 욕구-참여-만족 모델 제안

- 욕구-참여-만족으로 범주화된 문화향유 지표를 기반으로 각 지표의 특성에 따라 문화향유 방식을 새롭게 유형화하는 모델을 제안하고 세부적으로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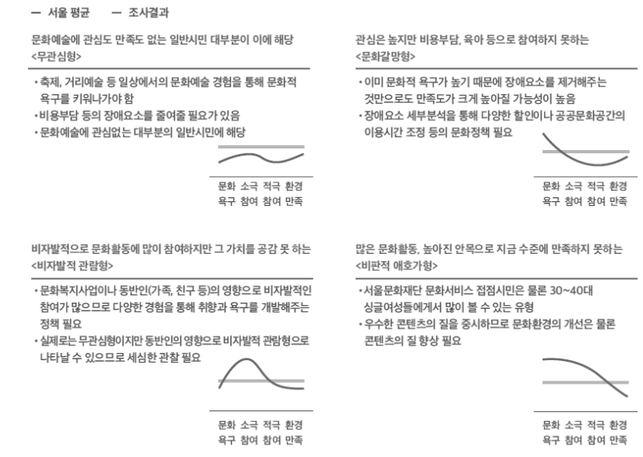

2. 접근 방향 》 군집분석 적용

- 8개 요인 기준 군집분석을 실시, 군집별 특성이 잘 드러나는 6개 군집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음
- 6개 군집별로 조사결과 및 응답자 특성을 심층분석하고 주요 특성에 따라 명칭을 부여함

투입변수	군집					
	1	2	3	4	5	6
관심 A6. 문화관심집단도	91.74	84.90	93.49	57.18	82.74	82.29
관심 D4. 문화중요도	90.39	83.17	89.11	52.97	79.42	79.08
관람 B1. 총횟수(환산)	37.58	21.68	66.59	12.33	16.12	22.73
관람 B1. 총비용(환산)	19.70	13.30	65.04	8.31	11.01	12.34
활동 C1. 문화활동	79.38	14.30	30.31	5.09	5.69	63.18
만족 D1. 문화생활만족도	75.30	62.84	66.88	44.27	34.48	50.78
만족 D2. 서울환경만족도	78.02	74.96	66.10	52.59	46.25	52.50
만족 D3. 지역환경만족도	69.15	65.43	47.90	48.76	34.53	41.11

군집	특성	명칭부여
1	참여활동이 높고, 만족도도 높음	활동만족형
2	활동은 하지만 관람은 중간수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고르게 높음	현실만족형
3	전반적으로 가장 문화활동에 적극적인 군집	만족관객형
4	전반적으로 관심도 낮고, 활동수준도 낮은 군집	무관심형
5	관심도와 중요도는 높지만, 활동 수준과 만족도는 낮음	문화장벽형
6	1과 비슷하게 참여활동은 높지만,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불만참여형

2. 접근 방향 》 군집분석 적용

- '무관심형'은 일반시민과 문화관심집단 간 분포 차이가 가장 큰 유형, 일반시민 중 35.7%가 무관심형
- 특히 50대 이상 고연령층 중 절반에 가까운 시민이 이에 속하며, 20대에서도 23.3%가 '무관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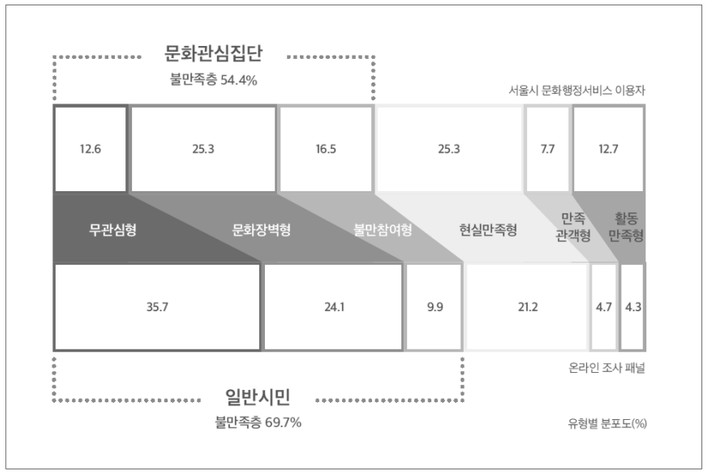

3. 의의와 한계

- 문화향유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분석방법 적용
- 다양한 분석 통해 향유특성 이해 제고 및 분석방법의 특성 확인

- 분석 난이도가 높아 지표 이해 및 활용에 장애물이 될 수있음
- 정책목표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현업 활용 범위 확대 어려움

문화관련 통계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방안

2. INTER-DATA

1. 서울시 문화 관련 주요 통계

조사명		주관기관	조사주기	통계구분		개요	비고
서울서베이	문화분야 가구조사	서울연구원	격년	승인통계	조사통계	9개 지표 - 시민문화활동(설문조사)	
	문화분야 행정자료		매년		가공통계	14개 지표 - 시민문화진흥, 문화기반환경, 문화시장환경(행정자료)	
	기타분야 연관문항		매년		가공통계	5개 지표 - 도시발전과 주거(문화시설, 평생교육참여율), 관광(문화유산), 가치와 인식(삶의 만족도, 문화예술자원 봉사경험)	
서울 문화지표 조사연구		서울문화재단	미정	기타통계	가공통계	50개 지표 - 문화기반, 문화인력, 문화시장, 문화정책(행정자료) - 문화참여(설문조사: <서울서베이> 및 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 결과활용)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문화 관심집단	서울문화재단	미정	기타통계	조사통계	30개 지표 - 여가와 문화예술, 문화관람, 문화참여, 만족도, 문화와 삶 영역(설문조사)	
	일반시민 (온라인 조사패널)						
문화향수 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격년	승인통계	조사통계	50여개 지표 - 예술행사관람실태, 문화예술관련 지출, 문화예술 교육 경험, 문화예술공간이용, 문화동호회 참여,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실태 등(설문조사)	전체 10,000 샘플 중 서울은 1,200내외

2. 통계 관련 영역의 확장

- 문화에 대한 통계를 여가로 확장할 경우 여가활동 전반, 여행/관광, 체육활동 및 독서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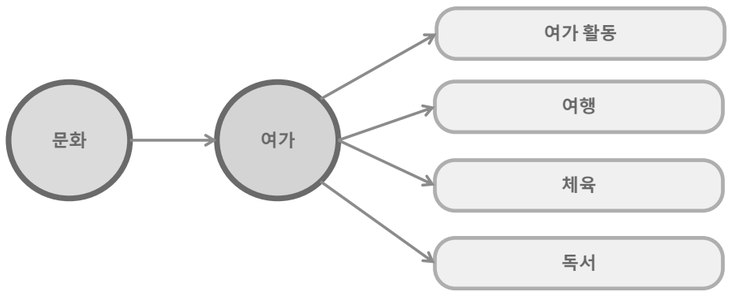

2. 문화 관련 승인 통계

- 예술인실태조사를 포함해 여가, 독서, 여행, 체육 등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가 생산되고 있음
- 문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통계의 생산 주기를 단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조사명	주관기관	조사주기	개요
국민여가 활동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년	▪ 만 15세 이상 10,602명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 (2016) - 여가활동 참여실태 / 사회성 여가활동 - 동호회 활동 / 휴가, 연휴 활용 - 여가공간 / 여가자원 활용실태 / 여가생활 만족도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3년	▪ 14개 분야 예술인(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등) ▪ 현재 활동 예술분야, 주 활동 직업,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횟수 등 지난 1년간 자원봉사 활동 경험, 가구 총 수입 등 전업 예술인 종사 여부, 전업 예술인 고용형태, 겸업 예술인 고용형태 등 4대 보험 가입 형태, 실업급여 수혜 경험 등
국민독서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년	▪ 성인 :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학생 : 전국의 초등학생(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 독서생활, 독서량과 책의 선택, 독서환경과 독서대화, 독서 프로그램 및 독서 모임 참여, 독서 활성화 방안 등
국민여행 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반년	▪ 전국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 ▪ 여행목적(지), 여행지출액, 여행소감, 기타 여행 문항(주요 이동 수단, 숙박시설 및 숙박일수 등)
국민생활 체육참여 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년	▪ 전국의 만 10세 이상 남녀(17개 시도) ▪ 건강과 체력 및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 여가 및 체육활동 여건, 체육활동 효과, 과학적인 체력관리, 행복지수 등

3. 문화 관련 DATA의 확장

- 문화2030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문화지표 및 문화관련 직접 통계, 연관통계 등이 지속적으로 축적됨
- 새로운 이슈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통계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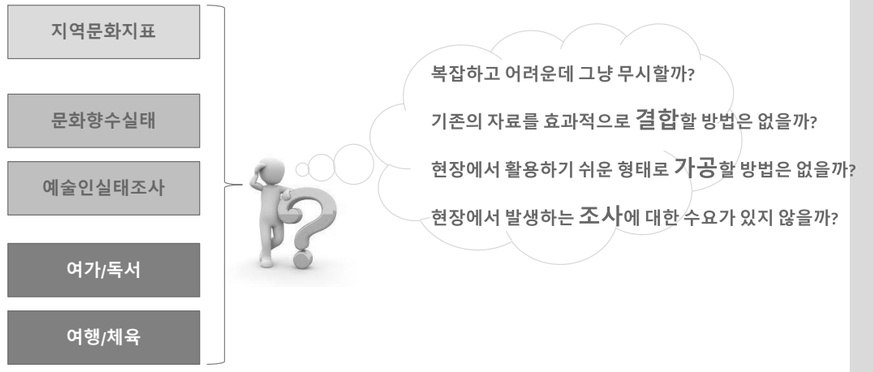

4-1. 자료의 결합

- 현재 공개된 통계 데이터와 향후 공개될 데이터를 광역 단위로 체계적으로 축적
- 광역 단위 단일 지표가 아닌 성별/연령별/학력별 등의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확보 및 분석

지역문화지표

문화향수실태

예술인실태조사

여가/독서

여행/체육

광역별 통계자료는 이미 나와있지 않나요?

번거롭기는 하지만, 수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부와 65세 이상의 특성을 알고 싶어요

현재 공개된 Data로는 뽑아낼 수 없습니다.
원 Data를 받아서 별도의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필요한 Data는 특성 대상 자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7 / 20

4-2. 자료의 가공

- 지역별 세부 데이터가 확보된 상태에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의 지표를 추출
-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형태로 광역 단위 문화환경 전반에 대한 보고서 발간

지역문화지표

문화향수실태

예술인실태조사

여가/독서

여행/체육

1. 광역 기준 세부 데이터 확보
2. 데이터 가공 프로그램 세팅
3. 현장 활용 가능한 지표 추출 (← 현장수요 확인)
4. 백서 개념의 지속적 리포트 생산

18 / 20

4-3. 자료의 생산

-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조사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조사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의 축적 및 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지역문화지표

문화향수실태

예술인실태조사

여가/독서

여행/체육

1. 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사 수요 확인
2. 조사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 작성
3. 결과 분석에 대한 지원 및 데이터 축적
4. 장기적으로 문화 조사 관련 노하우 축적

19 / 20

5. Data와 정책, 間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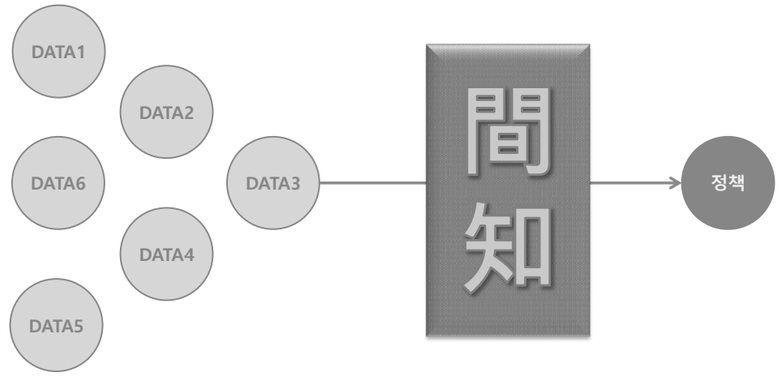

20 / 20

종합토론

1일차 종합토론 ‖
2일차 보충토론 및 아젠다 정리

MEMO

MEMO